

2009

성과관리매뉴얼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총괄 | 성과조사 및 분석 | 지식재산권 관리 | 기술료 관리 | 성과평가 | 성과확산

KICTEP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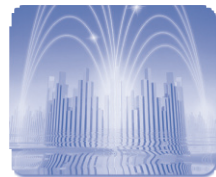
제1장 성과관리 총괄.....01

I. 성과관리 개요	2
1.1. 목적	2
1.2. 연구성과 정의	2
1.3. 성과정보 유형	3
1.4. 성과관리 전략	3
II. 성과관리 체계 및 구성	4
2.1. 성과관리 체계	4
2.2. 성과관리 구성	6



제2장 성과조사 및 분석.....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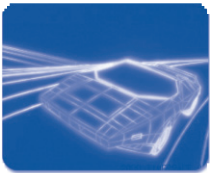
I. 성과 조사 및 분석 개요	12
1.1. 정의	12
1.2. 목적	12
1.3. 관련법규	13
1.4. 조사·분석절차	13
II. 성과조사	14
2.1. 조사대상	14
2.2. 조사시기	14
2.3. 조사항목	14
2.4. 조사방법	17
2.5.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19
III. 성과분석	21
3.1. 분석대상	21
3.2. 분석시기	21
3.3. 분석체계	21
3.4. 사업진단 및 기초분석	22
3.5. 연구성과 분석	23





IV.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사·분석	26
4.1. 목적	26
4.2. 조사·분석 대상	26
4.3. 조사·분석 절차	26
4.4. 조사·분석 방법	27
4.5. 조사·분석 항목	27

제3장 지식재산권 관리 29



I. 지식재산권 개요	30
1.1. 지식재산권이란	30
1.2. 지식재산권 유형	30
1.3. 지식재산권 관리 절차(연구기관)	32
II. 등록절차 및 방법	33
2.1. 특허출원·등록 절차 및 방법	34
2.2. 프로그램 등록	35
III. 지식재산권 소유기준	37
3.1.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기준	37
3.2. 지식재산권 등록 및 관리	39

제4장 기술료 관리 41

I. 기술료 관리 개요	42
1.1. 제도개요	42
1.2. 주요개정 내용	42
1.3. 관리체계	43
II. 기술실시계약	45
2.1. 계약시기	45
2.2. 기술료의 유형	45

CONTENTS

Ⅲ. 기술료 감면	47
3.1. 감면대상 및 절차	47
3.2. 감면금액	48
Ⅳ. 기술료 징수 및 사용	49
4.1. 징수금액	49
4.2. 징수방법	49
4.3. 기술료 징수 및 사용기준	50



제5장

성과평가 53

I. 성과평가 개요	54
1.1. 도입취지	54
1.2. 성과평가의 유형	54
II. 사업평가	55
2.1. 목적	55
2.2. 기본원칙	55
2.3. 대상사업	55
2.4. 수행체계	56
2.5. 평가대상 및 항목	57
2.6. 특정평가	58
2.7. 자체평가	62
III. 과제평가	66
3.1. 평가목적	66
3.2. 관련법규	66
3.3. 평가체계	66
3.4. 추적평가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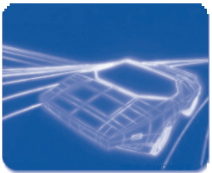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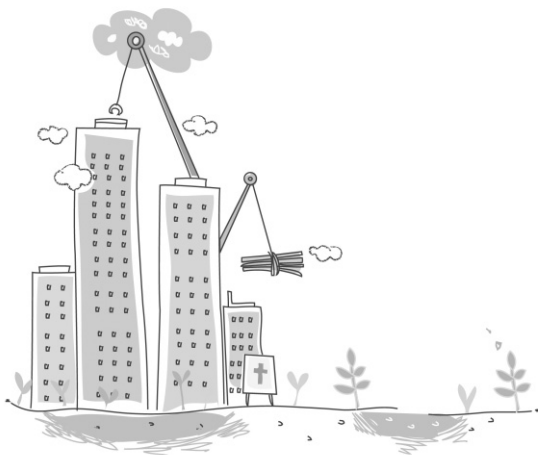


제6장 성과확산 71

I. 성과확산 개요	72
1.1. 관련법규	72
1.2. 목적	72
1.3. 성과확산 절차 및 방법	72
II. 성과홍보	73
2.1. 건설교통기술 은행(C·T Techno Bank) 운영	73
2.2. 성과총람 발간	75
2.3. 성과관리협의회 운영	76

[별첨]	81
[별첨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성과부분발체)	82
[별첨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91
[별첨 3]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성과부분발체)	98
[별첨 4]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성과부분발체)	106
[별첨 5]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작성요령	112
[별첨 6] 지식재산권·논문·제도 등 인정기준	121
[별첨 7] 공통 성과지표 인정기준	126
[별첨 8] 기술실시계약서	133
[별첨 9]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138
[별첨 10]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139
[별첨 11]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140
[별첨 12]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141
[별첨 13] 기술료 감면 신청서 및 의견서	142





PART

I

성과관리 총괄



I. 성과관리 개요

II. 성과관리 체계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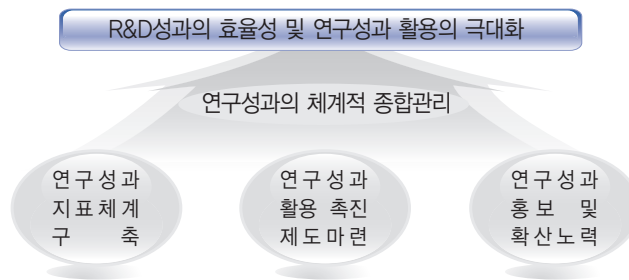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제1장 | 성과관리 총괄

I 성과관리 개요

1.1. 목적

- 연구성과의 종합적인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성과D/B를 공유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의 공동 활용을 촉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집된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함



1.2. 연구성과 정의

- 연구성과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총칭¹⁾
- 연구성과라 함은 연구과정에서 창출되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Cohen & Levinthal, 1989)

1) 별첨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1.3. 성과정보 유형

● 연구성과

- 성과에 대한 원문정보로서 과학기술적 가치를 갖는 것
- 후속연구,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산업·경제적 목적으로 활용

● 성과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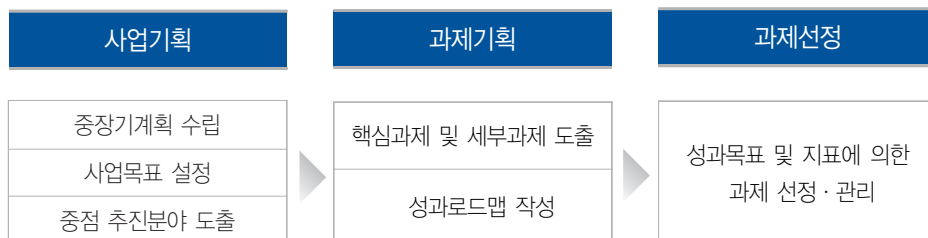
- 성과활동 정보로서 통계적 가치를 갖는 것
- 성과중심의 조사·분석·평가, 예산조정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1.4. 성과관리 전략

●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 투입·관리 중심의 R&D를 성과중심의 R&D 기획·관리·평가로 전환하고 이에 맞는 성과지향적인 관리시스템 도입
- 연구자가 과제 수행과정에서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여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의 체계적 종합관리 실시

● 성과중심의 과제 기획·선정 프로세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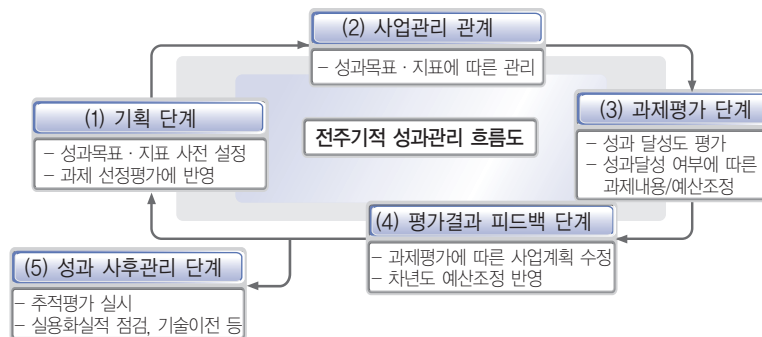


III 성과관리 체계 및 구성

2.1. 성과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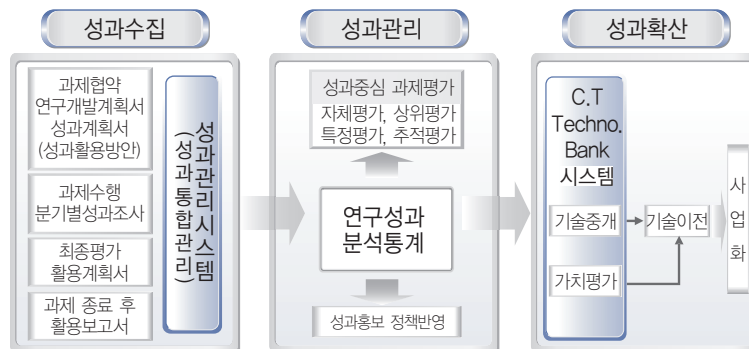
● 전주기적 성과관리

- 연구기획에서 성과확산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성과관리 실시
- 기획 → 사업관리 → 과제평가 → 피드백 →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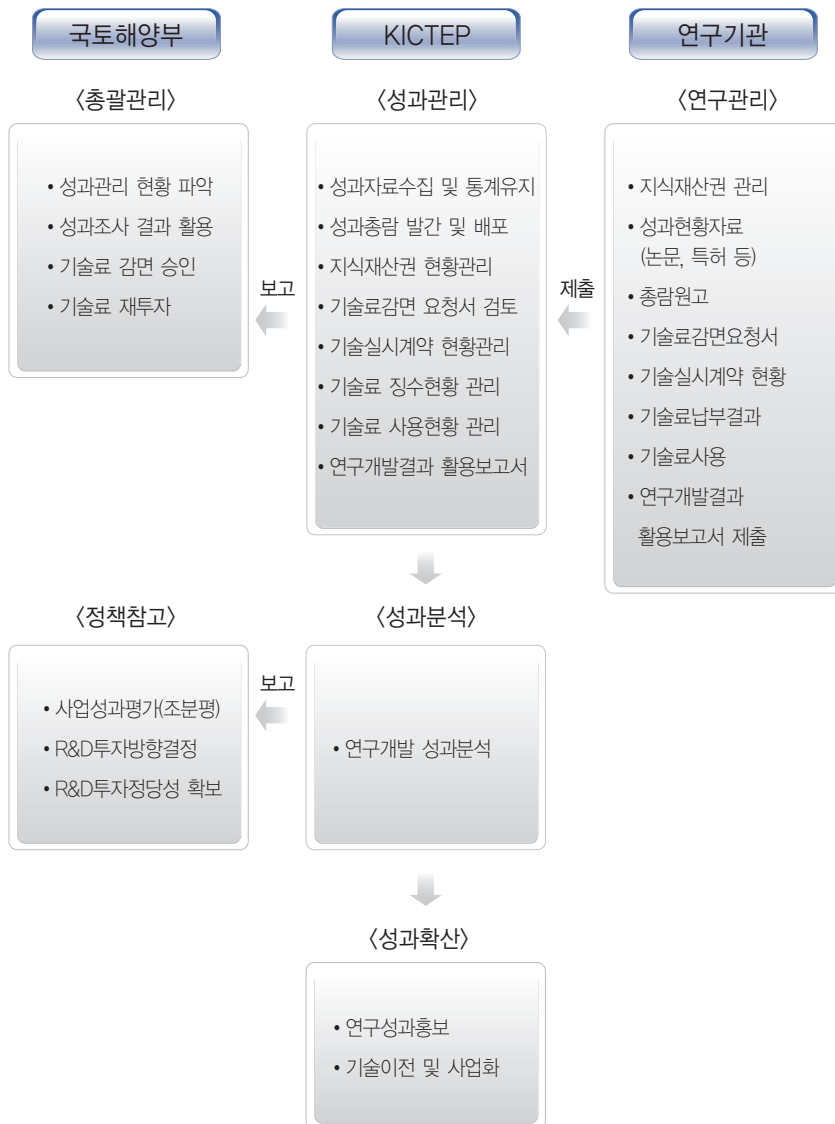


● 성과관리 프로세스

- 연구포털서비스를 통해 분기별 성과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성과확산을 통해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성과 활용의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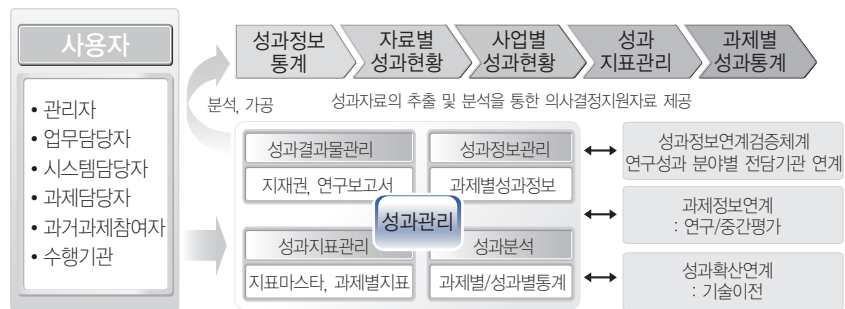


● 성과관리 주제 및 역할



2.2. 성과관리 구성

● 성과관리 업무흐름도



● 성과관리 주요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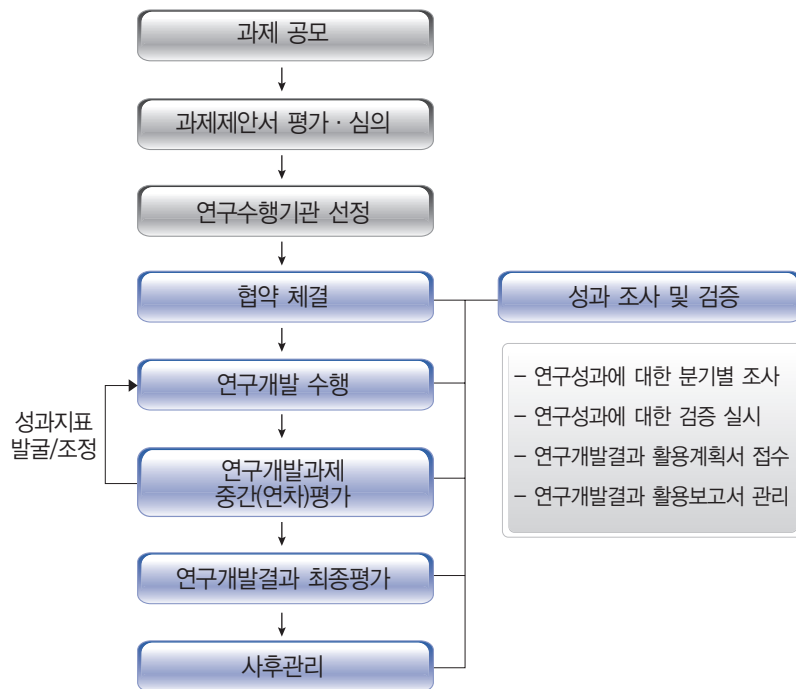
구분	업무 추진사항
성과조사	◆ 성과조사 및 검증 - 지식재산권 및 기술료 관리 등 ◆ 활용보고서 접수
성과분석	◆ 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양적·질적 효과분석 ◆ 보유기술 목록집 및 특허분석 자료 발간 등
성과평가	◆ 사업 특정평가 ◆ 사업 자체평가 ◆ 사업 상위평가 ◆ 추적평가
성과확산	◆ R&D 성과포럼 및 전시회 ◆ 성과총람 등 자료집 발간 및 배포 ◆ 우수성과 선정 및 연구성과 홍보 ◆ 성과관리 협의회 운영 ◆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 성과조사

- 수행계획에서 추적평가까지 성과정보를 전주기 통합 관리
- 연구포탈시스템(<http://ctpass.kictep.re.kr>)을 통한 실시간 On-line 성과조사 실시
- 사업별 성과 목표치 대비 달성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사업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가이드 제공

● 성과분석

- 연구자가 실시간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연구성과를 분기별로 성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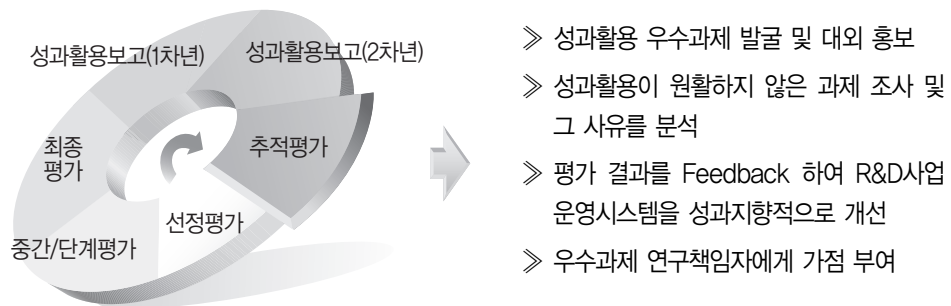
〈과제단위 성과관리〉

● 성과평가

■ 사업단위 자체/상위평가 및 특정평가 실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상위평가 실시
- 심층분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특정평가를 실시
-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위평가 및 특정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

● 과제단위 추적평가 실시



● 성과확산

■ 우수성과 발굴

-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이루어진 우수한 성과사례를 조사·발굴하여 표창·포상 등 연구개발 동기부여 및 대외 성과 홍보에 활용

■ 건설교통기술 은행(C.T.Techno Bank) 운영

- 연구개발결과물, 건설신기술, 기타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술을 DB화하여 서비스함으로써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계

● 연구성과 홍보

- 건설교통 R&D성과포럼 및 기술이전설명회 개최, 특허정보 분석보고서, 성과총람 등을 발간

● 성과관리협의회 운영

- 연구성과의 발굴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연구성과의 합리적인 관리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운영방안을 모색



PART

II

성과조사 및 분석



I. 성과조사 및 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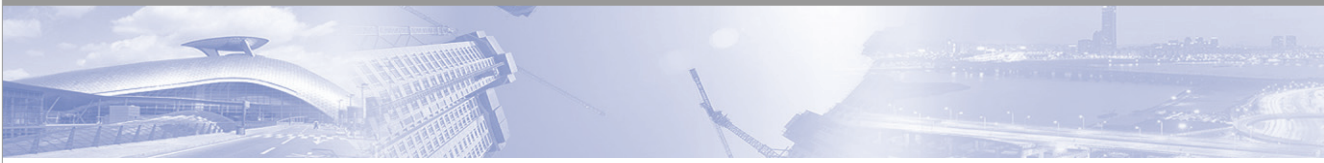
II. 성과조사

III. 성과분석

IV.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사·분석

II
성과조사
및
분석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제2장 | 성과조사 및 분석

I 성과조사 및 분석 개요

1.1. 정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완료 후에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또는 부산물로 얻어지는 산출물(Output)을 수집하고, 연구성과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Outcome)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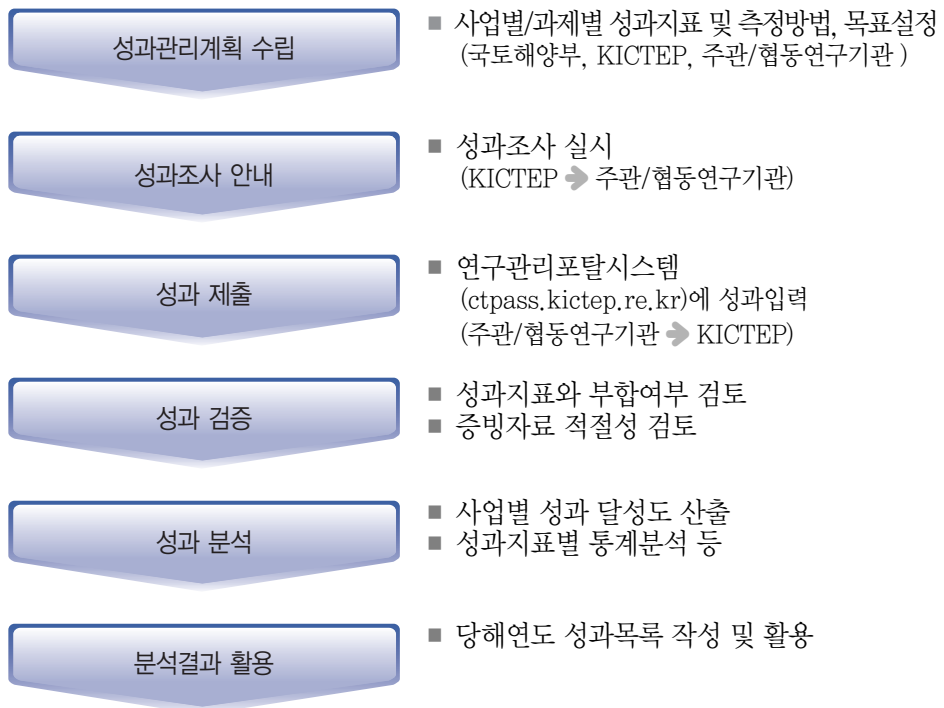
1.2. 목적

-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투입 및 산출성과 조사
→ 건설교통R&D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인 연구성과를 수집 및 종합하여 체계화된 자료로 제공
→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
- 건설교통R&D의 연도별·사업별·지표별 성과동향 분석
- 성과분석 결과를 신규사업(과제)의 발굴 및 기획, 계속과제의 진도관리 등에 피드백(feedback)하여 활용

1.3. 관련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²⁾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³⁾
-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1조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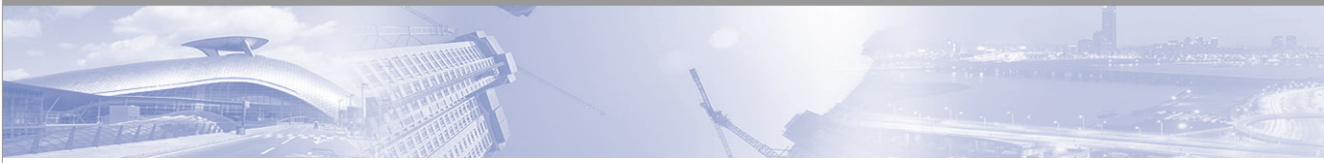
1.4. 조사 · 분석절차



2) 별첨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

3) 별첨3(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참조

4) 별첨4(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III 성과조사

2.1. 조사대상

- 조사대상 : 계속과제, 종료 후 익년부터 5년 이내 과제
 - ※ 기획과제, 정책과제, 중단과제, 실패과제 제외

2.2. 조사시기

- 연구포탈시스템(<http://ctpass.kictep.re.kr>)을 연중수시 온라인조사
 - ※ 매분기마다(연 4회) 집계된 연구성과 검증

2.3. 조사항목

- 연구성과 특성에 의해 분류된 성과지표를 연구성격 및 수행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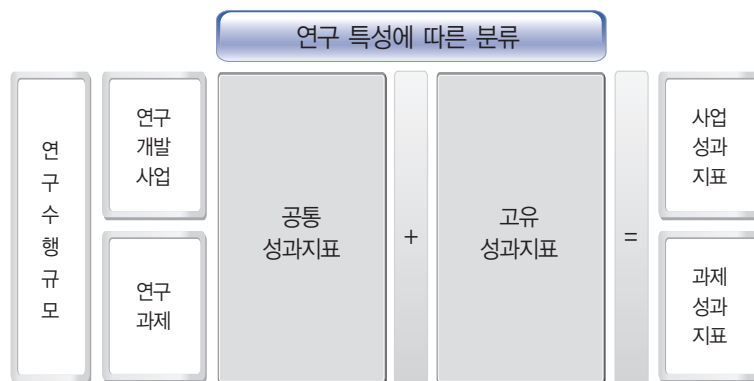
■ 연구특성에 따른 분류

공통 성과지표	건설교통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공통적 지표
고유 성과지표	공통지표 외에 과제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성과지표

■ 연구수행 단위에 따른 분류

사업 성과지표	건설기술혁신사업 등 건설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연차별 연구성과 관리 및 목표달성도 등 진도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지표
과제 성과지표	과제단위 목표 연구성과를 연차별로 설정하는 지표 ※ 위탁연구과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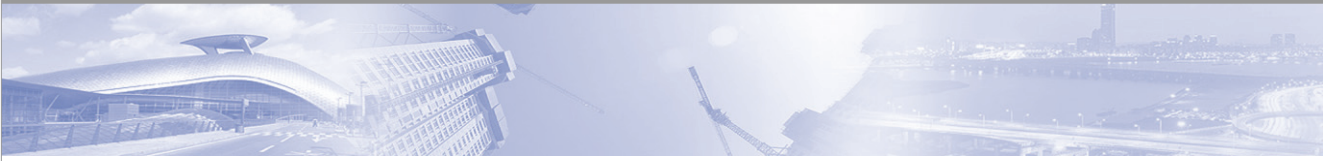
● 성과지표 구성체계



● 공통 성과지표 중 중점관리 주요 성과항목⁵⁾ 7개 선정

성과항목	인정기준
지식재산권	◆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소프트웨어, 상표, 서비스 등
국내외 학술지 게재	◆ 국내 학술지의 경우,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 SCI(Science Citation Index)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 SCI급 논문으로 인정(SCIE 포함) ※ 게재 예정 · 확정인 경우에는 게재 후 성과등록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 국내 및 국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실적
법 제정 및 개정	◆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 훈령, 예규, 고시, 지침상의 제정 및 개선 성과
정책제안 및 채택	◆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제안 또는 채택된 성과 ※ 특정 정책과 무관하게 연구결과로 보고서상 단순 “안”을 제시하는 경우 제외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및 반영	◆ 발주청에서 공공적 목적으로 제정한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또는 반영된 성과 ※ 설계 · 시공업체의 자체적인 기준, 시방서, 지침인 경우 제외
기술료	◆ 기술료 계약, 징수, 사용 실적에 대해 전문기관에 문서로 보고된 성과

5) 별첨6(지식재산권 · 논문 · 제도 등 인정기준) 및 별첨7(공통 성과지표 인정기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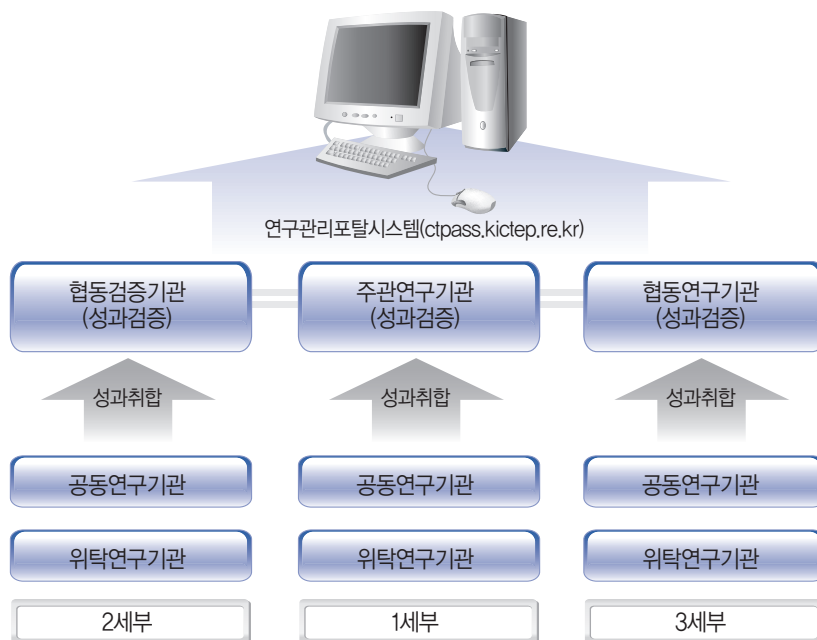
● 공통 성과지표 목록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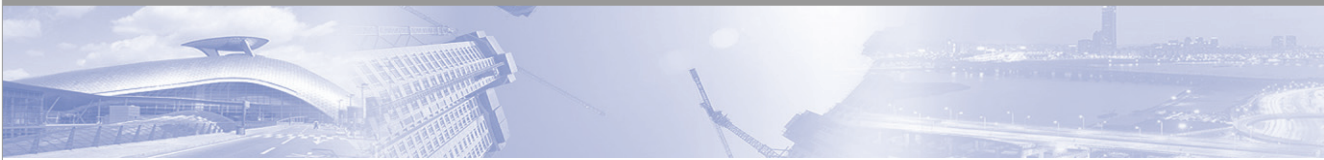
성과분류	성과지표
기술적 효과	특허출원 / 등록
	실용신안 출원 / 등록
	디자인 출원 / 등록
	소프트웨어(Soft Ware) 등록
	신기술 지정
	기타 성과(상표, 서비스 등)
학술적 효과	국내외 학술지 게재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공공적 효과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언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반영
	정책제안
	정책채택
	법 제정 및 개선
	산학연간 기술지원
연구개발 관련 홍보	연구개발 관련 홍보
현장시험	시제품 출시
	현장시험
연구성과 현장적용에 의한 비용 절감효과	현장적용에 의한 비용절감효과
인력활용/양성 효과	국내 장단기 연수지원 성과
	인력양성
국제화 협력성과	국제공동연구
	국제수요조사
	국제위탁연구
	국제인력교류(국내연구자 해외파견)
	국제인력교류(외국연구자 국내유치)
	국제정보교환
	국제협약(MOU) 체결
	국제회의, 학회, 워크숍, 심포지엄 등 신설(개최)
	기술무역
기술실시계약 및 사업화	기술실시계약
	사업화/제품화

6) 별첨7(공통 성과지표 인정기준) 참조

2.4.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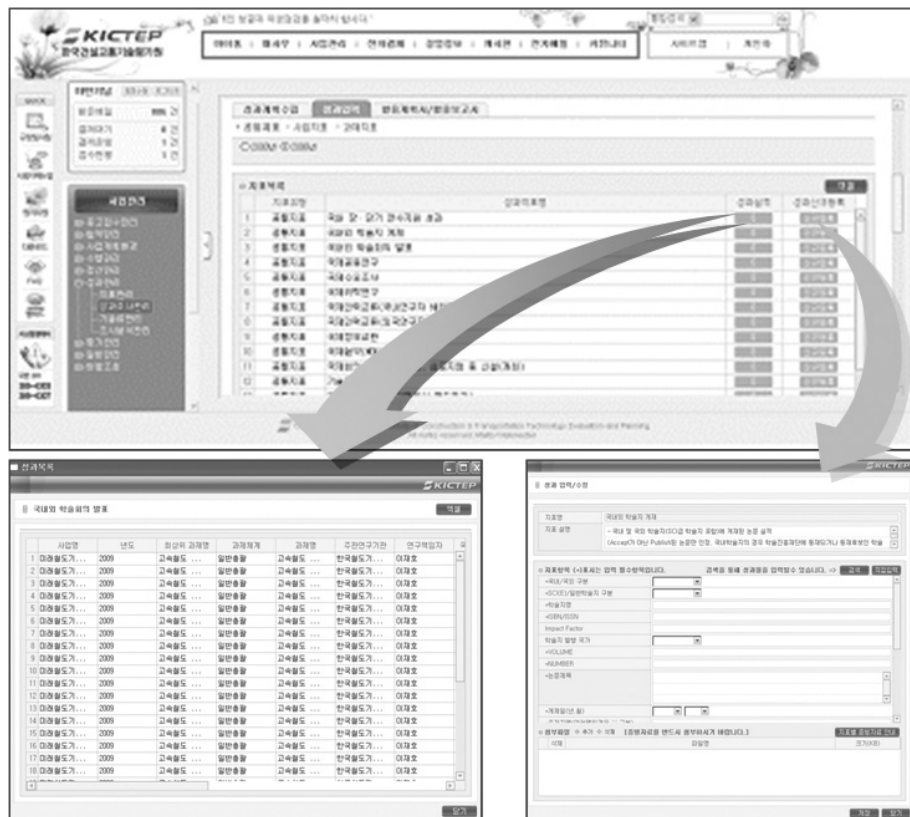
- 매분기마다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에게 성과조사 안내 실시
 - 주관/협동연구기관에서 하위 과제에 대한 성과를 취합하여 검증
 - 검증한 성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연구포털시스템(<http://ctpass.kictep.re.kr>)에 입력
 - 성과제출 프로세스
예)연구단 과제





● 연구성과 제출방법

- 연구관리포털시스템(<http://ctpass.kictep.re.kr>)을 활용한 온라인 제출
-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에서 연구성과를 수집·검증하여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



〈성과목록화면〉

〈성과등록화면〉

2.5.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 관련규정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⁷⁾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 매년 2월말까지

● 제출대상

■ 종료과제



※ 기획과제, 정책과제, 중단과제, 실패과제 제외

7) 별첨3(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참조

● 제출방법⁸⁾

- 연구관리포털시스템(<http://ctpass.kictep.re.kr>)을 활용한 온라인 제출



8) 별첨5(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작성요령) 참조

III 성과분석

3.1. 분석대상

- 분기별 성과조사에서 수집된 연구성과(공동 성과지표, 고유 성과지표 등)
- 연구개발사업 1차수혜자(연구책임자) 및 2차수혜자(기술이전 기업 및 현장적용 기관)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실시

3.2. 분석시기

- 당해연도 성과조사가 마감되는 4/4분기 이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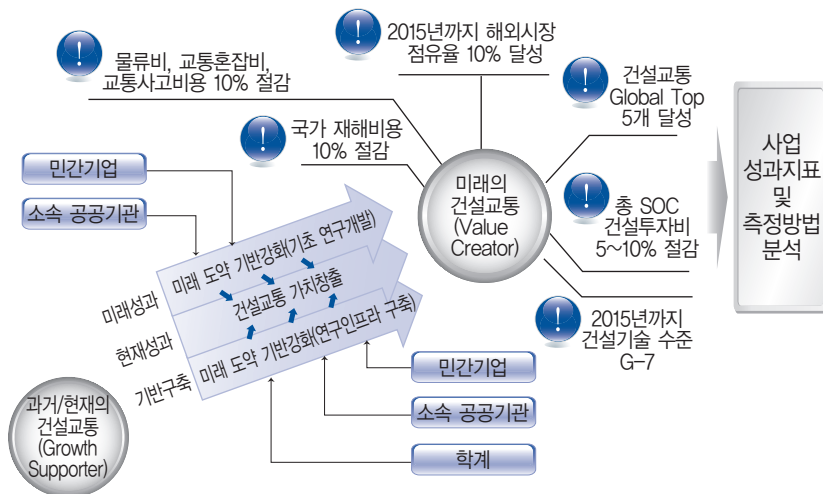
3.3. 분석체계



3.4. 사업진단 및 기초분석

● 사업비전 및 목표

- 건설교통 혁신 기술로드맵에 의거한 사업비전 및 전략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분석



● 사업현황 분석

- 과제 수 및 정부출연금 현황, 혁신로드맵 대비 사업현황

● 사업수행 형태

- 사업단, 연구단, 일반과제 등 연구 규모에 따른 연구수행형태 분석

● 수행기관 분석

- 출연(연),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등 연구수행 주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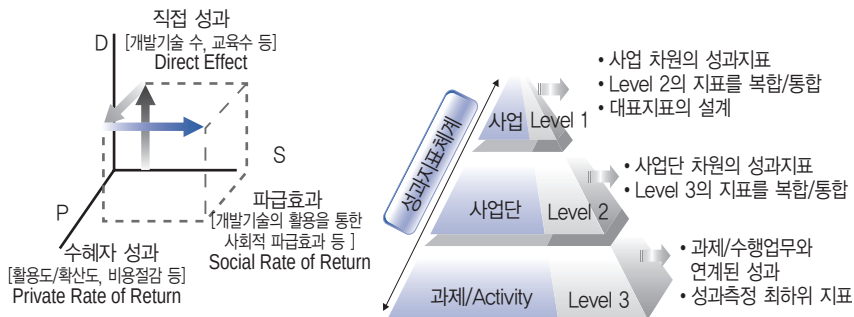
● 포트폴리오 분석

- 연구과제 목적물 및 과학기술표준체계, 연구유형에 따라 과제를 분류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분석

- 기술수준 분석
 - 연구개발사업 단위로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을 분석
- 사업추진 적정성 분석
 - 미래유망기술과의 연관성 분석
 - 사업의 전략목표와 연구성과 비교·분석을 통한 성과지표 및 평가에 관한 개선방안 도출

3.5. 연구성과 분석

- 성과분석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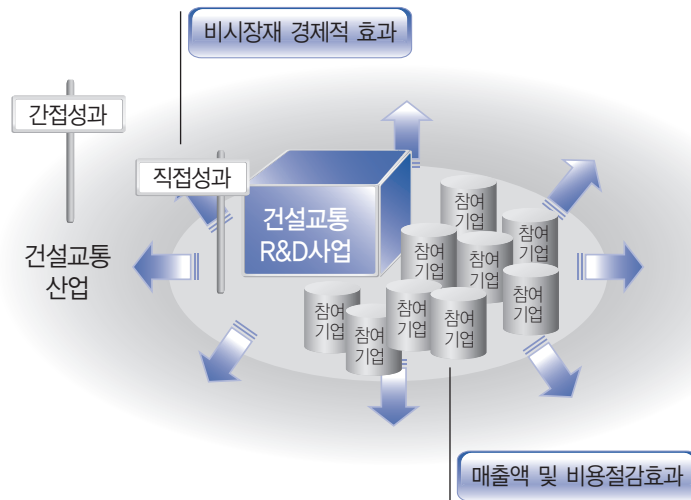


- 산출성과 분석(직접적 성과)

주요성과	양적 성과분석	질적 성과분석
논문	연도별, 사업별 추세분석 연구비 1억원당 논문실적 분석	SCI(E) 논문실적 비율 분석 논문 Impact Factor(IF) 분석
특허	연도별, 사업별 추세분석 연구비 1억원당 특허성과 분석 특허 등록률 분석	특허 인용분석
기타성과	연도별, 사업별 추세 분석 연구비 1억원당 성과 분석	-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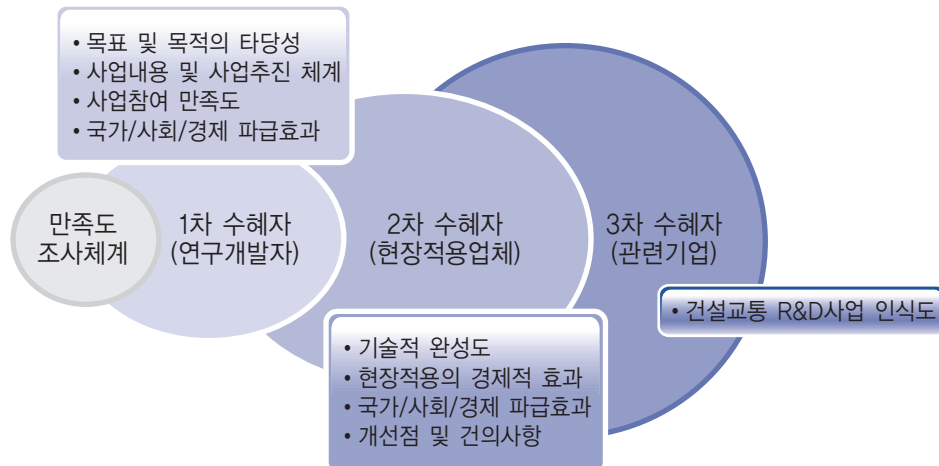
- 건설교통 연구개발사업에 미치는 직접적 성과와 건설교통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 성과에 대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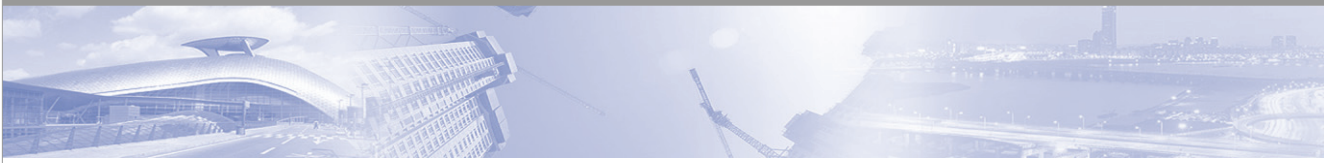


- 참여기업의 실현매출액 분석
- 연구성과 현장적용 비용절감효과 분석
- 연구개발사업에 투입된 자본이 건설교통산업 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 분석
- 건설교통R&D사업이 산업군 전체에 미치는 기대효과 분석

● 만족도 조사 · 분석(수혜자 분석)

- 연구참여자 및 연구성과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 분석
- 조사체계





IV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사·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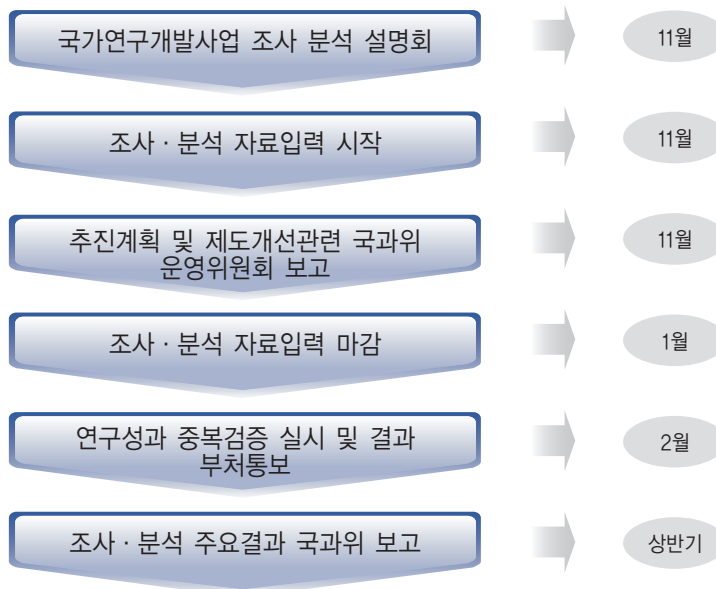
4.1.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평가 및 예산 조정·배분, 정책 및 사업기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4.2. 조사·분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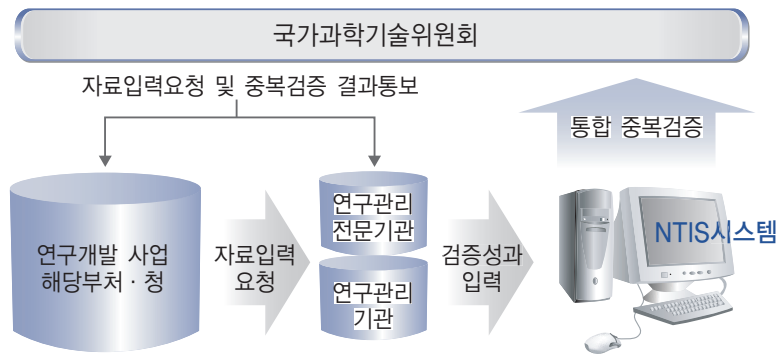
- 정부예산(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중 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모든 연구개발사업
 -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전력산업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4.3. 조사·분석 절차



4.4. 조사 · 분석 방법

- 각 부처 · 청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연구관리 기관에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 (NTIS)에 접속하여 해당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입력
- 연구성과 중복검증 후 각 해당 부처 · 청에 결과 통보



4.5. 조사 · 분석 항목

- 국가 R&D 과제를 연구개발단계, 지역 등 투자관련 7개, 연구인력 1개, 연구성과 6개 등 총 14개 항목별로 조사 · 분석

구 분	분류단위	구 분	분류단위
경제사회목적	국방, 산업기술 등 13개 분류	연구인력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단계	기초, 응용, 개발	사업목적	원천공공복지, 산업기술 등 4개 분류
연구수행주체	기업, 대학, 출연연 등	논문	학술지, 논문명
지 역	16개 광역자치단체별	특허	특허출원/등록
기 술	과학기술표준분류, 6T, NTRM	기술료/사업화	기술료 수입, 사업화
공동연구	국제 공동연구	인력양성/활용	인력양성 및 활용



PART

III

지식재산권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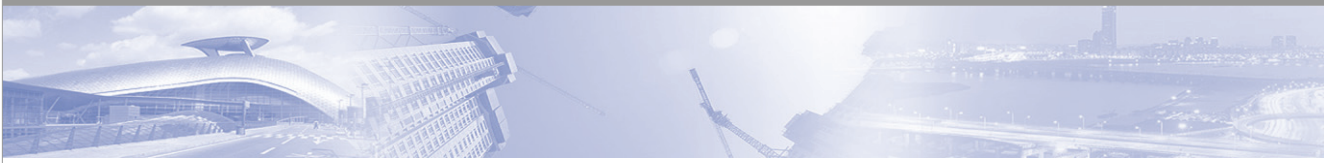
I. 지식재산권 개요

II. 등록절차 및 방법

III. 지식재산권 소유기준

III
지식재산권
관리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제3장 | 지식재산권 관리

I 지식재산권 개요

1.1. 지식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 가운데 재산권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함
- 지식재산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국의 국내법과 조약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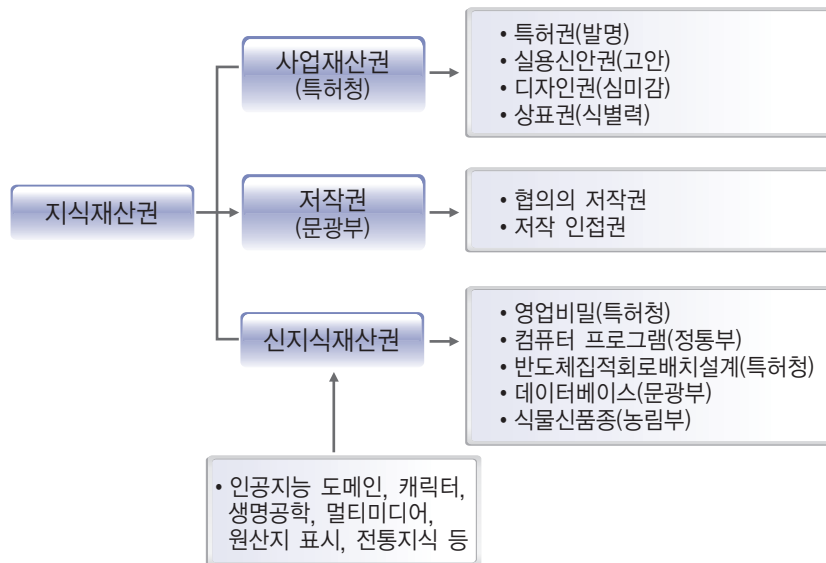
〈특허요건〉

- 1) 신규성(Novelty)
 -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용(X) (2006. 10. 01 출원분부터 국제주의 적용)
 - 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X)
- 2) 진보성(Inventive Step)
 - 출원전에 당업자가 신규성의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X)
- 3) 산업상 이용 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

1.2. 지식재산권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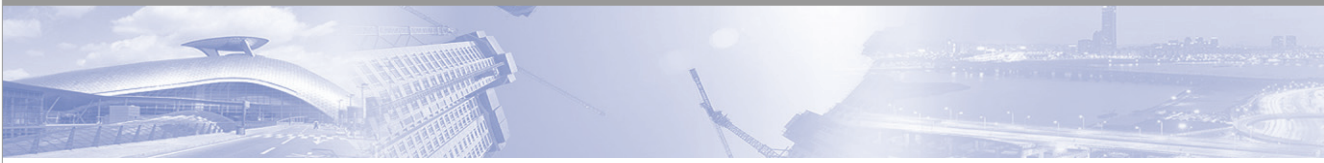
- 지식재산권은 저작권, 저작권접권,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산지표시 및 영업비밀 등을 포괄하는 개념
 - ※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컴퓨터프로그램, 식물신품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 ※ 가장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은 특허권의 형태로 산출

〈지식재산권의 분류〉



〈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구분	종류	보호대상	보호양태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발명 기술적 창작 심미적 창작 상품식별	재산권적 보호
저작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산업저작권	학문, 예술분야의 정신적 창작물 소프트웨어	재산권적 보호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첨단산업기술 영업비밀	채권적 보호



〈산업재산권의 종류〉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장)	상 표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 한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물품의 형상 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미감이 있는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이 되도록 사용하는 문자, 도형, 기호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
보호 대상	물건(물질,장치) 방법(사용, 제조 방법)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	물품의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통한 심미감	상표 사용자 업무상의 신용
보기	벨의 전화기	분리형을 이체형으로 한 형상, 구조	전화기의 외관에 대한 형상, 모양(탁상전화기를 반구형 또는 네모꼴로 한 것)	전화기제조회사가 자사 제품의 포장으로서의 상호, 마크
존속 기간	설정등록 후 출원 일로부터 20년	설정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10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기능, 반영구적 권리)

1.3. 지식재산권 관리절차(연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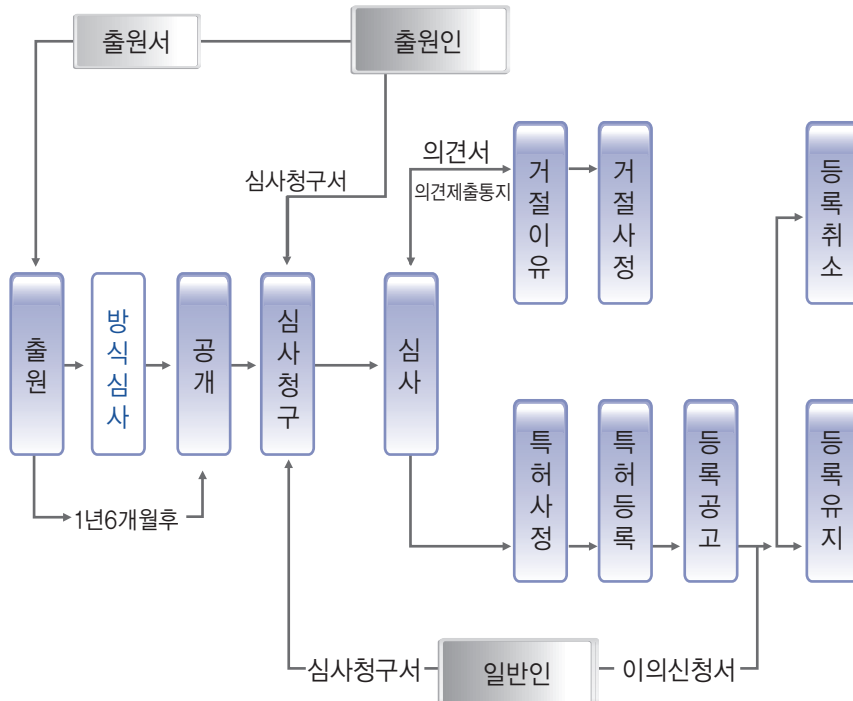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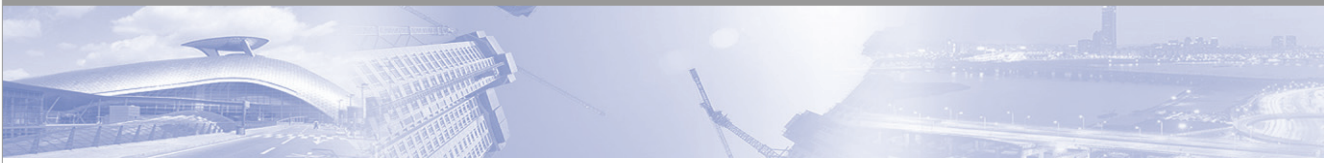
III 등록 절차 및 방법

2.1. 특허출원 · 등록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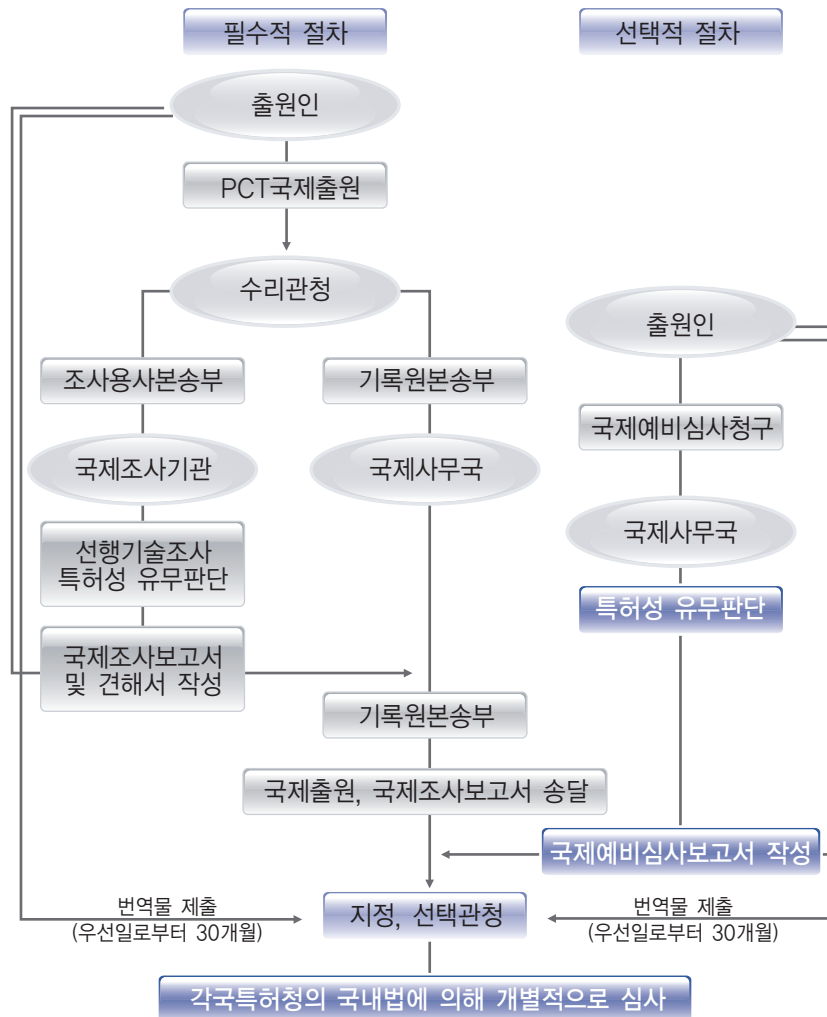
● 국내 특허

- 출원인은 출원서를 우편, 전자출원 또는 직접 특허청에 제출
-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출원일자를 부여하고 출원번호를 통지
 - 우리나라는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출원된 특허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절차



2.2. 프로그램 등록

● 개요

- 저작권법 제53조에 의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등록을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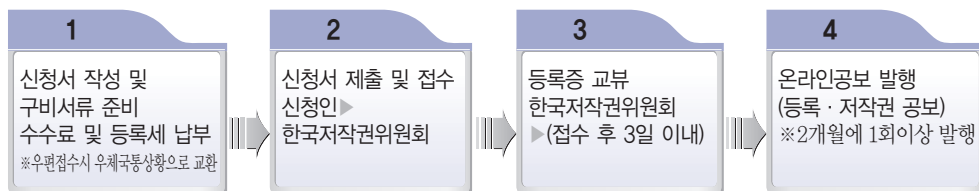
● 등록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

● 등록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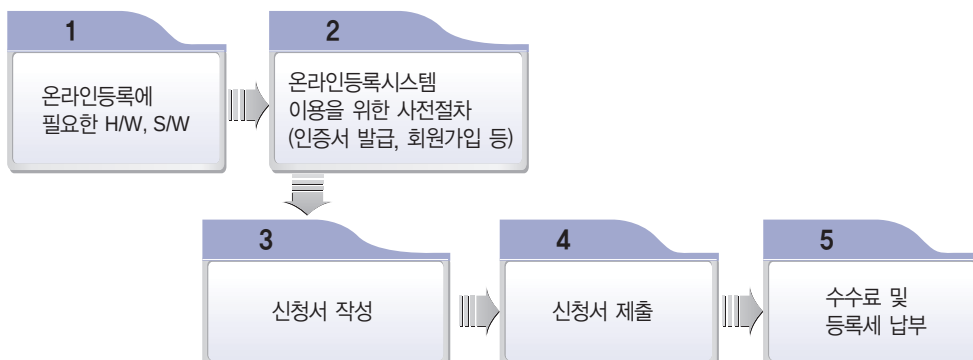
- 컴퓨터프로그램 :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함(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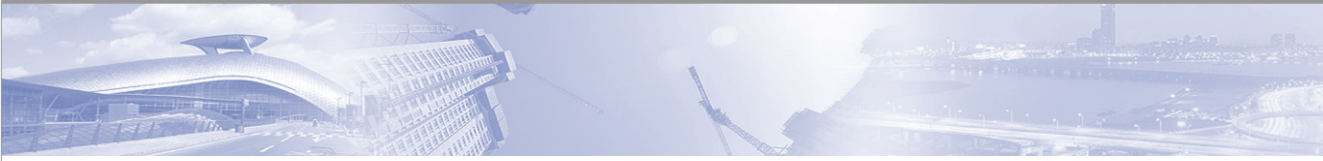
※ 프로그램언어 또는 그 용법에 관한 규약은 제외

● 방문·우편접수 등록절차



● 온라인 등록절차





● 등록의 효력

창작연월일 추정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당해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함 – 저작권법 제53조
프로그램배타적 발행권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음 – 저작권법 제101조의6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음 – 저작권법 제123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프로그램저작권 이전, 질권의 설정, 처분제한 등을 등록을 함으로써 권리변동 사항을 명확히 하며 제3자에 대한 대항효과가 있음 – 저작권법 제54조

III 지식재산권 소유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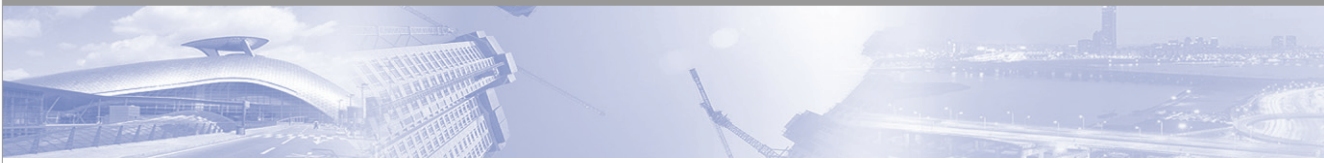
3.1.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기준⁹⁾

- 유형적 결과물(시제품, 기자재 등)
 -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되, 참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것은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무형적 결과물(지식재산권 등)
 -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 단독 소유 원칙
 - 참여기관(공동, 참여, 위탁)은 다음의 경우 협약에 따라 무형적 결과물을 단독 소유 가능
 - 참여기관이 자체개발 또는 주도적 개발한 경우
 - 주관(협동)연구기관이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 국토해양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공동소유 인정
 -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장관 승인)

〈 유 의 사 항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되어서는 안되며, 출원 및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평가원에 제출
다만, 운영규정 제39조 제6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양여 받을 수 있음

9) 별첨3(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참조



예) 연구단(주관연구기관)이 세부과제1 수행시 소유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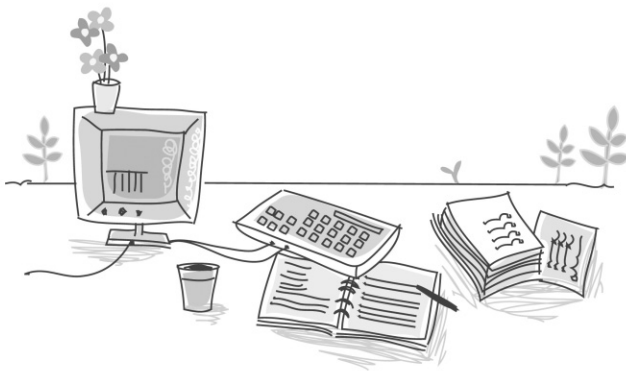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기타 주관·협동·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2. 지식재산권 등록 및 관리

- 등록 및 관리주체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장
- 연구개발 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고
-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지원기관, 연구과제명 등 정부지원으로 발생하였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
- 지식재산권을 국외에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 사본을 전문기관 장에게 제출
 - ※ 연구성과 분야별 관리 유통전담기관에 별도 등록
-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¹⁰⁾
- 실시기업이 기술료를 완납한 경우 해당성과물을 실시기업에 무상 양여 가능
-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이 활용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을 적정 기관에 양도 가능

10) 별첨 4(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2조)참조



PART

IV 기술료 관리



I. 기술료 관리 개요

II. 기술실시계약

III. 기술료 감면

IV. 기술료 징수 및 사용

IV
기술료
관리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제4장 | 기술료 관리

I 기술료 관리 개요

1.1. 제도개요

- 기술료 정의
 -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자(이하 소유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
- 기술료 제도의 의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발생된 유·무형적 성과물을 민간기업 등에 이전(사업화)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이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함으로써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를 창출 하기 위함

1.2. 주요개정 내용

- 연구개발 성과활용 · 확산 촉진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 기업 등과 1건 이상 기술실시계약 체결

변경전(2009.6)	변경후(2009.7)
- 계약의 주체 :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는 경우 제약 없음	- 계약의 주체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 소유기관은 해당 과제에서 1건 이상 (자체실시 포함) 기술실시계약 체결 <신규 및 계속과제 협약부터 적용> -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는 경우 기술료 납부 의무화 <신규과제 협약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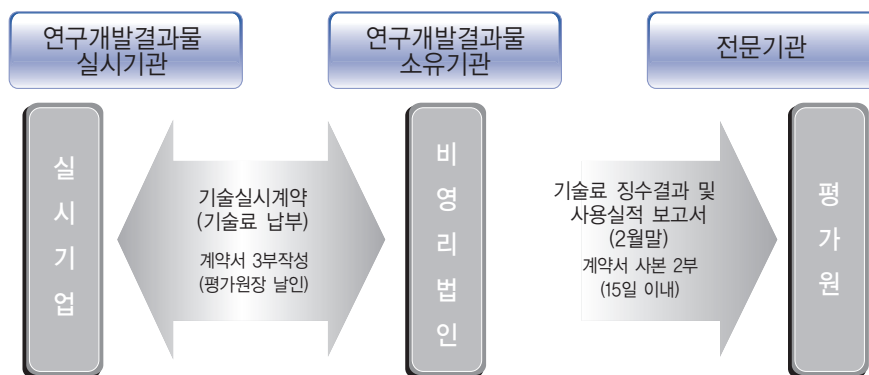
- 비영리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의 정부(전문기관) 납부 폐지
 - 기술료의 정부납부(20%)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인 공제회 출연
 - ※ 기술료의 9%를 공제회 출연(2013까지 1,000억원)

변경전(2008.12)	변경후(2009.1)
<기술료 정부납부> - 대학 : 정부납부 폐지 -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 20%이상 - 영리기관 : 30%이상	<기술료 정부납부> - 비영리기관 : 정부납부 폐지 - 영리기관 : 30%이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1.3.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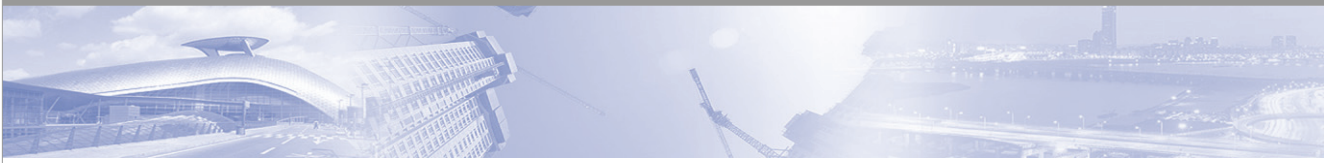
-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참여기업 또는 제3의 기업(실시기업)이 활용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장은 기술실시계약서¹¹⁾ 사본2부와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¹²⁾, 기술료사용실적 보고서¹³⁾를 전문기관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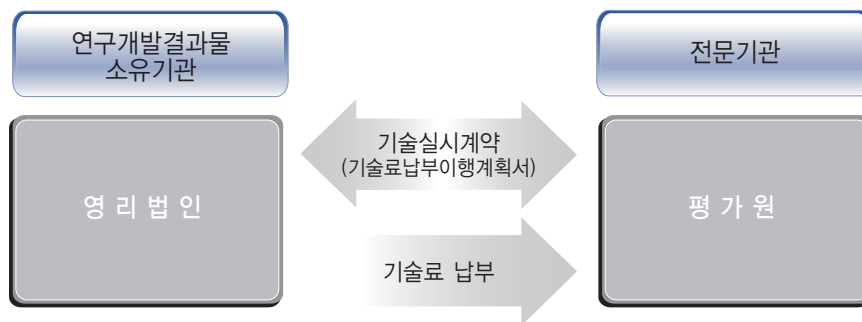
11) 별첨8(기술실시 계약서) 참조

12) 별첨11(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참조

13) 별첨12(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참조



- 영리법인 연구기관이 자체 개발한 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는 경우
 - 영리기업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장은 전문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맺고,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¹⁴⁾를 제출



- 영리법인 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참여기업 또는 제3의 기업(실시기업)이 활용하는 경우
 - 영리법인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 장은 기술실시계약서¹⁵⁾ 사본2부와 기술료징수결과 보고서¹⁶⁾, 기술료사용실적 보고서¹⁷⁾를 전문기관에 제출



14) 별첨9(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참조

15) 별첨8(기술실시 계약서) 참조

16) 별첨11(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참조

17) 별첨12(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참조

III 기술실시계약

2.1. 계약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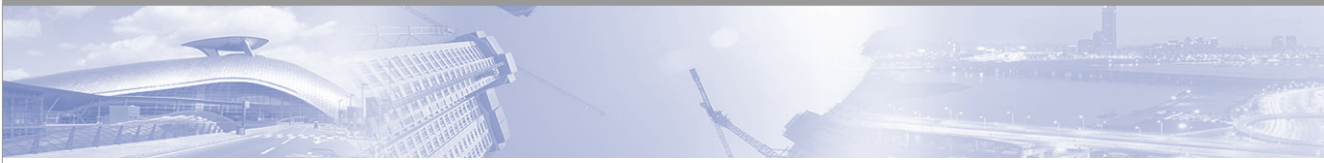
-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자체 실시 포함) 기술실시계약 체결
 - ※ 2009년 6월 30일 이후 신규·계속 협약 과제부터 적용
- 고정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혼합형태 포함) 선택 가능
- 기술료의 금액, 납부방법, 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은 소유기관과 실시기업간의 협의로 정함

2.2. 기술료의 유형

- 징수방법에 따른 분류
 - 고정기술료(Fixed Royalty) : 고정된 정액의 기술료를 산정
 -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 기술의 사용실적에 비례하여 기술료를 산정

기술료의 종류	부과형태	부과 기준
고정기술료 (Fixed Royalty)	의무 (정액)	연구개발이 "성공"한 경우 부과 (지경부, 환경부, 중기청)
	조건부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매출과 관계없이 부과 (교과부, 국토부)
경상기술료 (Running Royalty)	조건부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과 (지경부, 교과부, 국토부)

※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혼합하여 적용 가능



● 설정원인에 따른 분류

구분	의 의
약정(허락) 실시권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실시권
법정실시권	◆ 산업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의 공평한 분배의 필요성 때문에 실시권 자체를 특허법에 규정해 놓은 것 ◆ 법정된 사안이 발생하면 실시권이 당연히 설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실시권을 의미
강제실시권	◆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제한의 성격을 갖는 실시권 ◆ 국방상의 필요로 국가에 의해 실시가 강제되는 경우와 특허발명의 실시의 적극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실시권 설정을 강제하는 통상실시권

● 실시권 효력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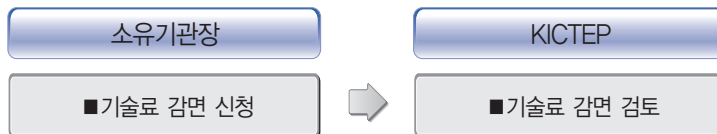
구분	의 의	효력
전용실시권	◆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와의 약정에 따라 정한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독점적
통상실시권	◆ 통상실시권은 특허법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비독점적

III 기술료 감면

3.1. 감면대상 및 절차

● 전문기관 장의 감면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는 경우
- 기술료를 조기 납부하는 경우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 신청서¹⁸⁾를 접수·검토하여 감면

●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면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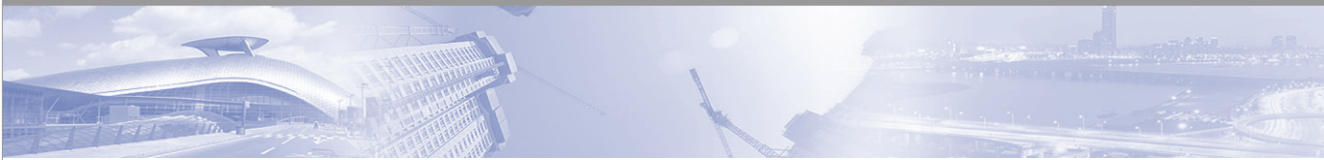
-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감면조정이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이 연구결과물을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기술의 수요처가 한정되어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계약하기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 신청서¹⁹⁾를 접수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감면

18) 별첨13(기술료 감면 신청서 및 의견서) 참조

19) 별첨13(기술료 감면 신청서 및 의견서) 참조



3.2. 감면금액

- 중소기업의 경우
 - 정부출연금의 70% 상당액 감면 가능
- 조기 현금 납부의 경우

대 상	감면비율
1년 이내 납부	납부할 기술료의 30%
2년 이내 납부	납부할 기술료의 20%
3년 이내 납부	납부할 기술료의 10%

※ 중소기업 감면과 중복하여 감면 가능

- 감면신청 시기
 - 기술실시계약 체결전 기술료를 감면하여 계약시 반영
 - 다만 조기납부의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감면
-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 기술료 감면 및 조정 신청서에 다음서류 첨부
 - 참여기업(실시기업)의 기술료감면(조정)의견서²⁰⁾ 및 증빙 서류 2부
 - 주관연구기관장의 검토의견서 2부
 - 연구과제 수행개요(연구계획서, 추진실적 등) 및 기타 참고자료 2부

20) 별첨13(기술료 감면 신청서 및 의견서) 참조

IV 기술료 징수 및 사용

4.1. 징수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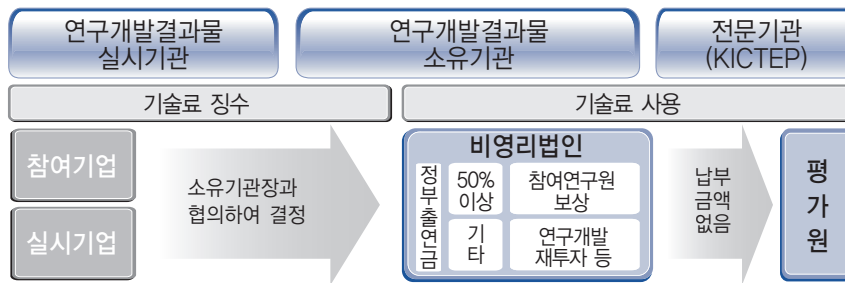
-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출연금 이상의 기술료를 받아야 함
- 정부출연금 이하가 되어도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결과물의 일부만 활용하는 경우
 - 과제 수행중 발생한 중간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 통상실시권과 관련된 기술실시계약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법으로 기술료를 받는 경우
 - 통상실시 또는 전용실시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금 이하로 고정기술료를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경상기술료를 받는 경우
 - 여러기관이 기술을 공동사용하면서 내는 기술료의 합이 정부출연금 이상인 경우
 -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상 기술이전이나 기술실시가 되지 않아 권리를 양도한 경우

4.2. 징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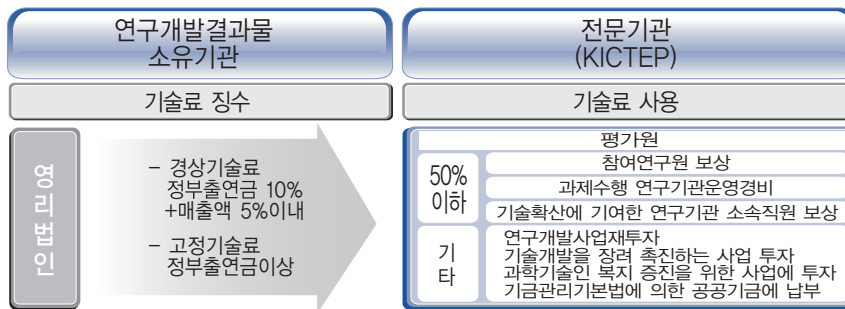
- 고정기술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출연금이상
-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참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에 상당하는 선불금 + 매출액의 5% 이내
 -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지 않은 실시기업의 경우
 -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술료

4.3. 기술료 징수 및 사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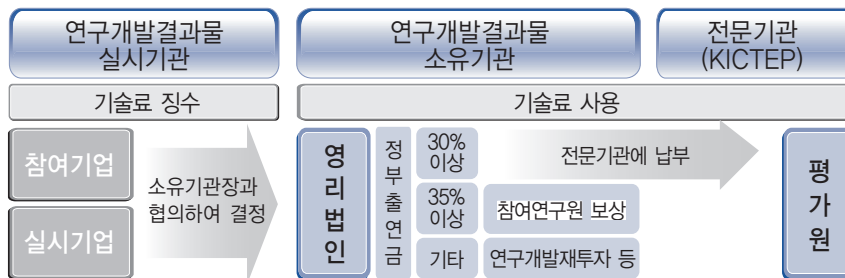
-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참여기업 또는 제3의 기업(실시기업)이 활용하는 경우



- 영리법인 연구기관이 자체 개발한 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는 경우



- 영리법인 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참여기업 또는 제3의 기업(실시기업)이 활용하는 경우



● 기술료 사용기준

소유기관	기술료 사용기준(정부출연금 지분에 한함)
비영리 기관	① 50퍼센트 이상 :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 ② 1항을 제외한 나머지 : 연구개발에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등에 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 ※ 정부(전문기관) 납부 폐지(2008.12.31. 개정)
영리 기관	① 30퍼센트 이상 : 전문기관에 납부 ② 35퍼센트 이상 :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 ③ 1, 2항을 제외한 나머지 : 연구개발에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대한 비용,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

※ 정부출연금 지분의 9%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 신설(대학제외)

● '07. 2. 7. 이전에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규 정 적 용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02. 03. 19. 이전	- 해당사업지침 적용 - 협약서에 따름	좌동
사 업 의 협 약 일 기 준 '02. 03. 20. ~ '05. 05. 31.	① 전문기관 납부 : A×30%이상 ② 참여연구원의 보상 : (A-①)×50%이상 ③ 연구개발 재투자 : (A-①)×30%이상 ④ 기관운영경비 : (A-①)×10%이내 ⑤ 지재권출원 및 관리,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보상	① 전문기관 납부 : A×50%이상 ② 참여연구원의 보상 : (A-①)×50%이상 ③ 연구개발 재투자 : (A-①)×30%이상 ④ 기관운영경비 : (A-①)×10%이내 ⑤ 지재권출원 및 관리,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보상
'05. 06. 01. 이후	① 전문기관 납부 : A×20%이상 ② 참여연구원의 보상 : A×50%이상 ③ 연구개발 재투자 : (A-①-②)×50%이상 ④ 기관운영경비, 지재권출원 및 관리,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보상 ※ 징수결과 보고 : 30일 이내 사용실적 보고 : 다음 년도 2월말	① 전문기관 납부 : A×30%이상 ② 참여연구원의 보상 : (A-①)×50%이상 ③ 연구개발 재투자 : (A-①-②)×50%이상 ④ 기관운영경비, 지재권출원 및 관리,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보상 ※ 징수결과 보고 : 30일 이내 사용실적 보고 : 다음 년도 2월말

※ A : 정부출연금



PART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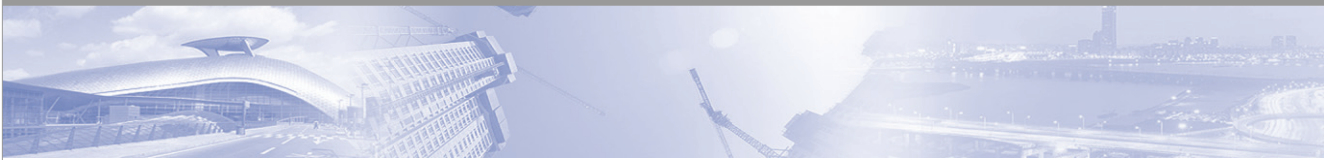
성과평가



I. 성과관리 개요

II. 사업평가

III. 과제평가



제5장 | 성과평가

I 성과평가 개요

1.1. 도입취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비 확대로 성과에 대한 요구와 투자 효율성에 대한 중요도 상승
- '05년 12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 R&D 평가제도가 성과중심으로 전환
- 성과중심의 R&D 기획·관리·평가를 통해 투입·관리 중심의 R&D를 성과중심의 R&D로 전환

1.2. 성과평가의 유형

- 평가대상 및 목적에 따라 구분

구분	목적	주관	평가유형
사업평가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R&D예산 조정·배분에 반영	기획재정부 R&D 수행부처	특정평가 상위평가 자체평가
과제평가	R&D과제 집행 및 관리의 책임성 확보	R&D 수행부처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Ⅲ 성과평가

2.1.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국가 R&D의 투자효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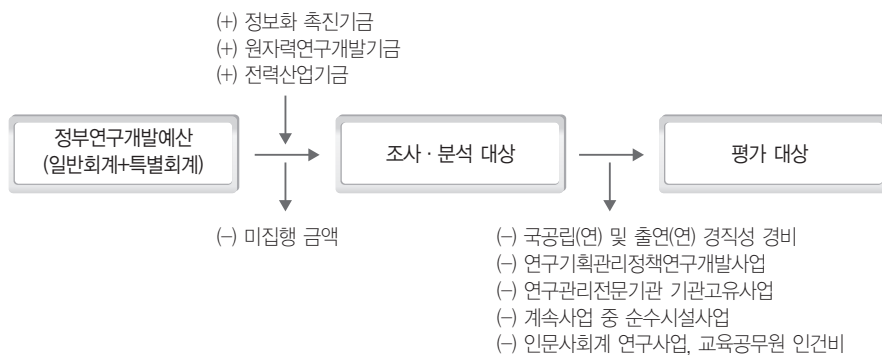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²¹⁾

2.2. 기본원칙

-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의 방법, 절차 등을 성과중심으로 전환
- 연구수행주체가 사전에 성과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2.3. 대상사업

-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 관련 기금사업 등
 - 조사·분석 대상은 정부예산 및 정부기금으로 추진된 연구개발사업 포함
 - 평가 대상은 조사·분석 대상 중 인문사회, 정책연구 등을 제외한 사업



21) 별첨 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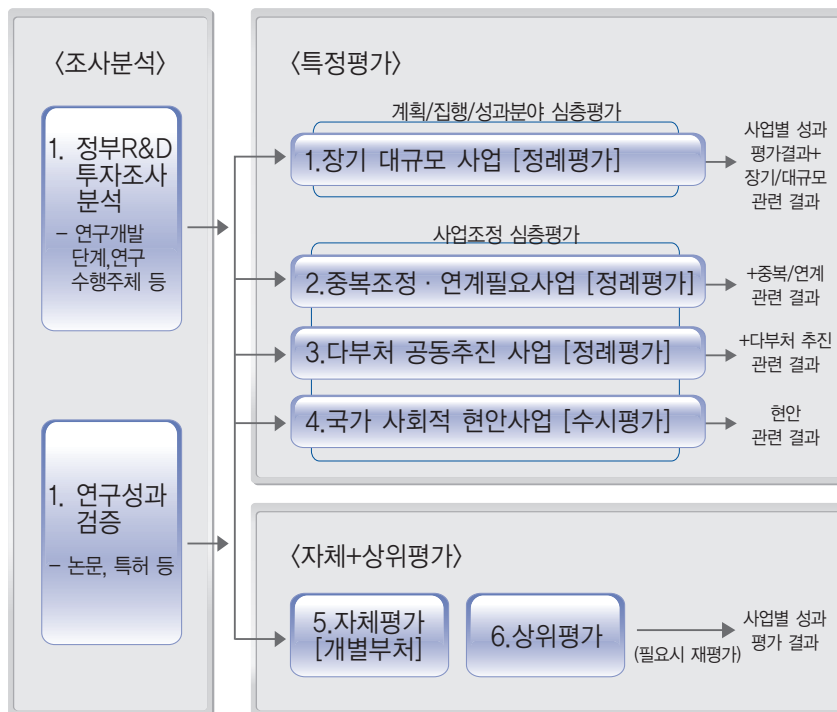
2.4. 수행체계

● 기획재정부 특정평가와 부처 자체평가로 구분

■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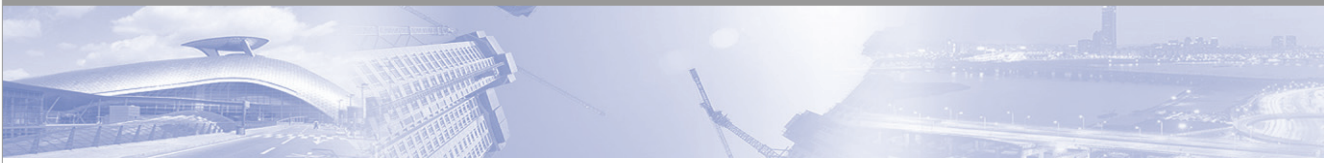
- 특정평가 : 장기/대규모사업, 중복조정/연계사업, 다수부처 공동사업 등에 대한 정례 심층 평가 및 현안사업에 대한 연중 수시평가 실시
- 상위평가 : 각 부처에서 수행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 검토

■ 중앙행정기관 : 당해연도 특정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2.5. 평가대상 및 항목

구 분	평가대상 및 항목
특정 평가	평가대상사업 중 자체평가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중 사업규모,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전문적·심층적 진단으로 사업개선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평가대상] ◆ 중복연계조정 필요,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성과점검 필요, 재정지출효율화 방안마련 시급, 국가·사회적 현안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 ◆ 사업규모 : 평가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 제외 ◆ 시급성 : 국정과제 등 향후 투자규모 확대, 사업구조 개편 등이 예상되어 성과점검이 시급한 사업 ◆ 평가가능성 : 성과분석을 위한 데이터가 미흡하거나 기밀을 요하는 사업 제외 ◆ 대체가능성 : 최근 정책연구 및 감사원 등의 감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안 마련이 가능한 사업 제외 ◆ 중복여부 :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감사원 등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업 제외 [평가항목] ◆ 주안점 선정평가대상사업별 주요 평가내용에 따라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체계성 등 평가 ◆ 적절성 : 정부지원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등 ◆ 효율성 : 투입/산출 수준, 사업추진체계의 효율성, 중복조정 필요성 ◆ 효과성 : 목표 대비 성과달성도, 고객만족도 등 ◆ 체계성 : 기획-집행-평가의 일관성, 성과관리 및 활용의 적절성
자체 평가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중심의 자체평가 [평가대상] ◆ 특정평가 대상 이외의 사업 중 부처 협의를 거쳐 1/3 선정 [평가항목] ◆ 사업목적 및 내용의 타당성 ◆ 사업관리 체계의 적절성 ◆ 사업개선실적 ◆ 사업별 연구개발 성과(핵심+일반 성과지표)
상위 평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점검 [평가대상] ◆ 자체평가 대상 사업 [평가항목] ◆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의 적절성 ◆ 자체평가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 평가결과의 적절성 ◆ 전년도 평가결과의 활용



2.6. 특정평가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기획재정부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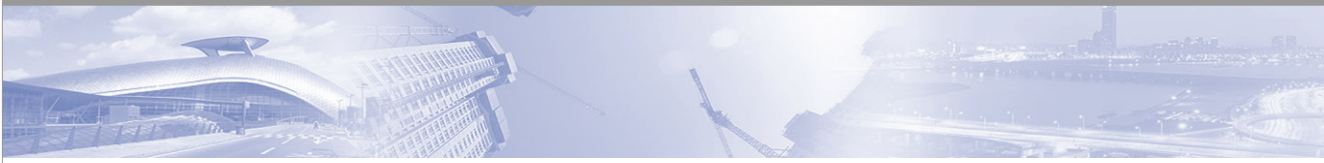
- 평가의 질과 전문성을 위해 적정 사업수를 유지하여 평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수시평가
- 차년도 부처 자체 예산편성 및 국과위 예산조정/배분에 반영하고, 사업내용 개선 필요시 구체적 대안 제시
 - ※ 사업계획의 변경, 관련 사업과의 연계추진, 부처간 사업추진체계 정비, 성과가 미진한 사업의 축소·중단 등

● 평가대상

평가 유형	평가 대상
장기/대규모사업	사업기간 10년 이상이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중에서 매년 평가 업무량 및 전년도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중복조정 또는 연계필요 사업	중복조정·연계가 필요한 사업(군) (예비분석결과, 관계부처, 요청 및 개별사업 평가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다수부처 공동사업	다수부처 공동참여사업(군) (예비분석결과, 관계부처, 요청 및 개별사업 평가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국가적·사회적 현안	중요도가 매우 높거나, 사회적 쟁점 사업(군)

● 평가절차





● 평가방법

■ 심층분석방식에 의한 평가 실시

유형	방법
장기/대규모사업	중장기 계획,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목적의 타당성, 자원투입의 적정성 등 검토
중복조정 또는 연계필요 사업	사업간 중복 및 연계조정 등 효율화 방안 검토
다수부처 공동사업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등 검토
국가적·사회적 현안	현안 및 평가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고 평가의견을 제시

● 평가요소

- 적절성 : 정부지원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등
- 효율성 : 투입/산출 수준, 사업추진체계의 효율성, 중복조정 필요성
- 효과성 : 목표 대비 성과달성도, 고객만족도 등
- 체계성 : 기획-집행-평가의 일관성, 성과관리 및 활용의 적절성

● 평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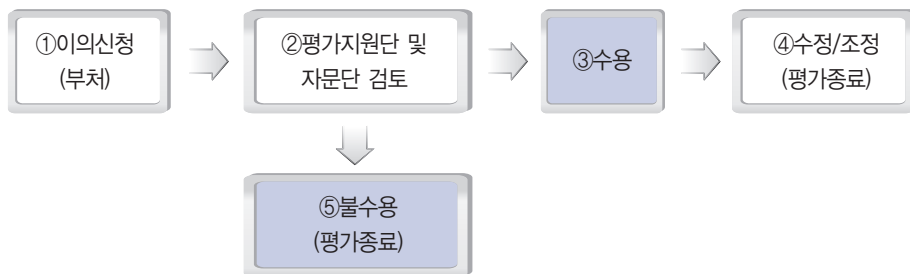
- 사전기획보고서, 사업개요,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 성과분석보고서, 사업계획 보고서, 자체평가자료, 세부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등 대상사업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부처에 요청

● 이의신청 심의

- 중간, 최종 평가결과안을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검토·반영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수용성 제고

● 이의신청 시기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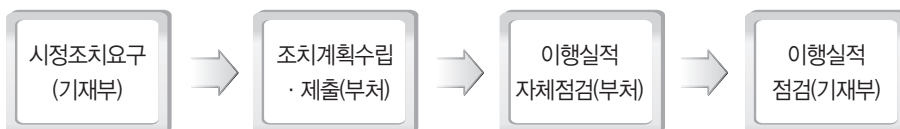
- 평가결과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를 명기하여 재정부에 서면으로 제출 하되, 필요시 해당부처 의견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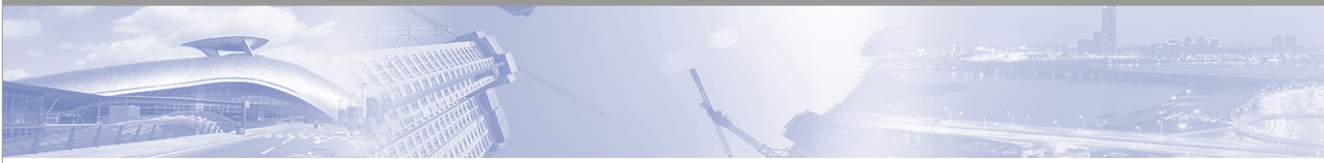
- 해당 평가지원단의 검토 및 평가자문단의 재검토를 거쳐 이의신청 수용/불수용 결정

●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 제도개선 실적 점검
 - 기획재정부는 해당부처에 특정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행실적을 점검
- 제도개선 이행실적은 1년간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연계 이행실적은 2년간에 걸쳐 점검·관리



- 평가와 예산 연계 강화
 - 평가결과의 예산연계기준을 마련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 제도개선 미이행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예산 삭감
 - 평가대상사업 선정단계부터 예산실과 협의함으로써 평가와 예산 연계 강화
 - 국과위 보고 및 예산실·부처 통보
- 평가결과를 국과위에 보고하고 예산실·부처에 통보



2.7. 자체평가

● 자체평가 개요

■ 관련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 평가목적 및 원칙

목적	기본원칙
◆ 부처의 자율적 성과 관리 능력 제고 ◆ 성과평가 실시를 통한 R&D 예산절감 및 성과 극대화 추구	◆ 부처 자율평가, 사업별 절대평가 원칙은 유지 ◆ 지역 및 사업별 특정지표 및 질적지표 확대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여 운영

● 자체평가 대상

■ 평가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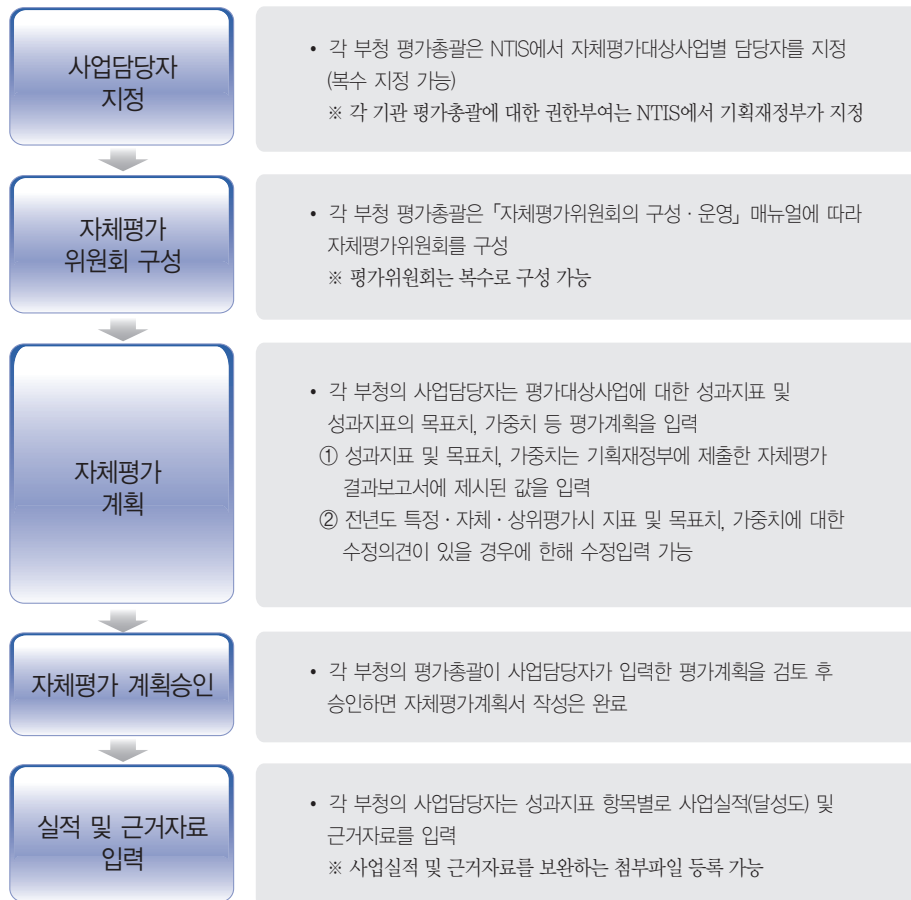
평가대상	평가제외대상
◆ 정부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중 연구개발예산으로 분류된 연구개발사업 및 정부기금으로 추진된 연구개발사업 ◆ 매년 특정평가 대상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연구개발사업 ◆ 자체평가 대상사업 중 부청 협의를 거쳐 1/3만 선정	◆ 인문사회 및 출연(연) 지원사업 ◆ 연구기획·관리·정책연구사업 ◆ 순수시설사업 ◆ 교육공무원 인건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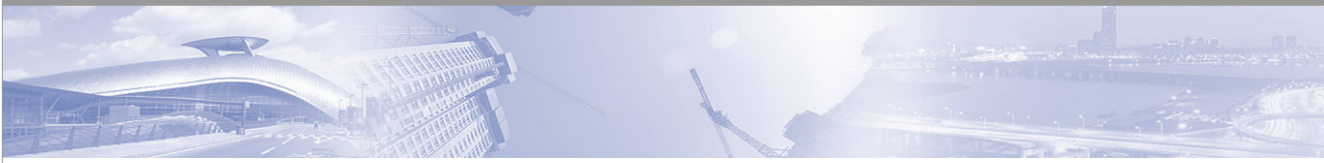
■ 평가단위

- 프로그램 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단위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단위로 평가단위 조정 가능

● 자체평가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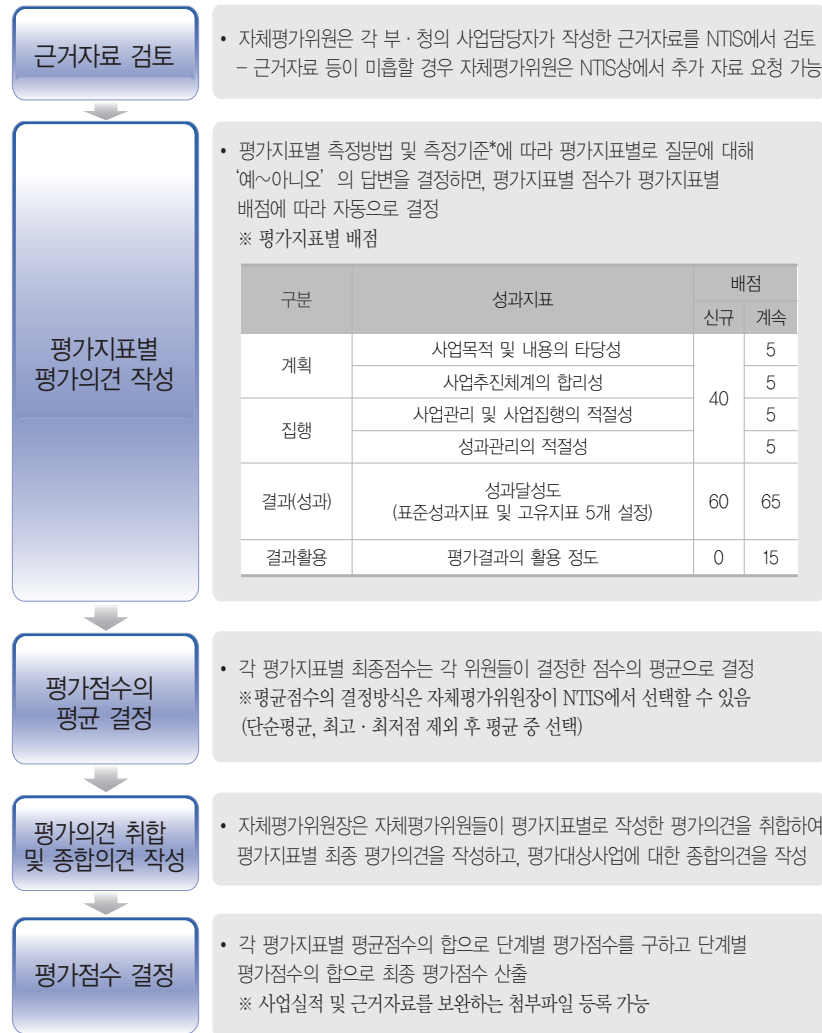
■ 자체평가 준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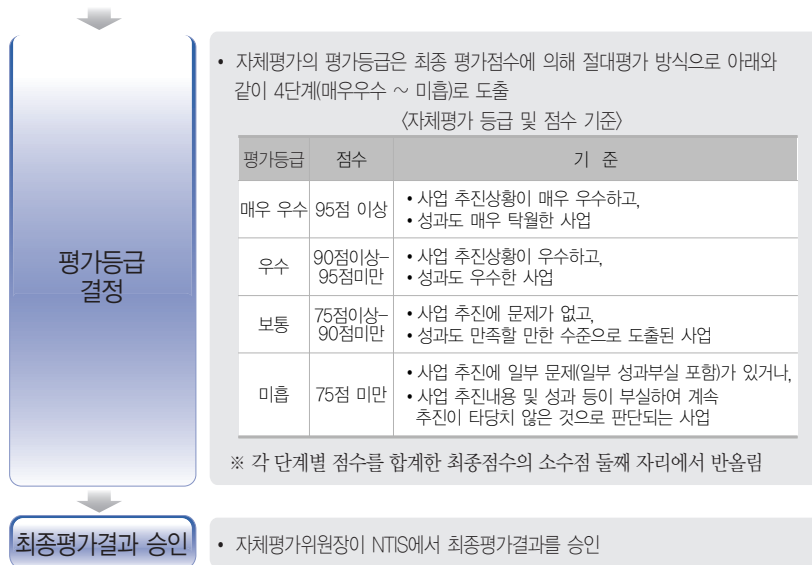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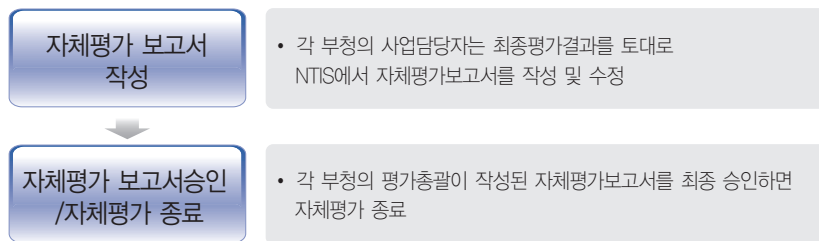
■ 자체평가 실시 단계

- ※ 자체평가위원은 평가지표별로 주어진 질문에 대해 자체평가 매뉴얼의 평가 지표별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평가근거자료를 활용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자체평가를 실시





■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및 종료 단계



● 평가결과 활용

■ 기획재정부

-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

■ 국토해양부/평가원

-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계획을 수정 · 보완
-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연구 기관 등에 권고
-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등에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음

III 과제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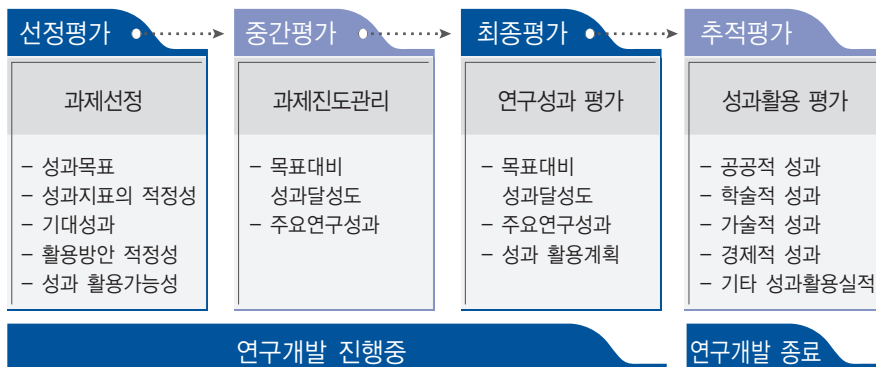
3.1. 평가목적

- 연구성과 관리·활용실태 평가를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성과활용의 극대화 유도
- 연구성과 평가를 통해 투자효율성 분석, 당초 목적 달성 여부 판단 등을 통한 R&D 투자 효율성 제고

3.2. 관련법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3.3. 평가체계



※ 본 성과관리 매뉴얼에서는 성과발생 이후의 관리·활용과 관계되는 추적평가에 대해서만 기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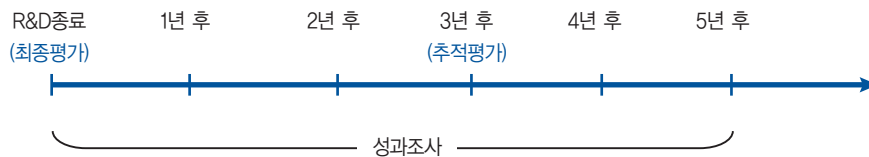
3.4. 추적평가

● 평가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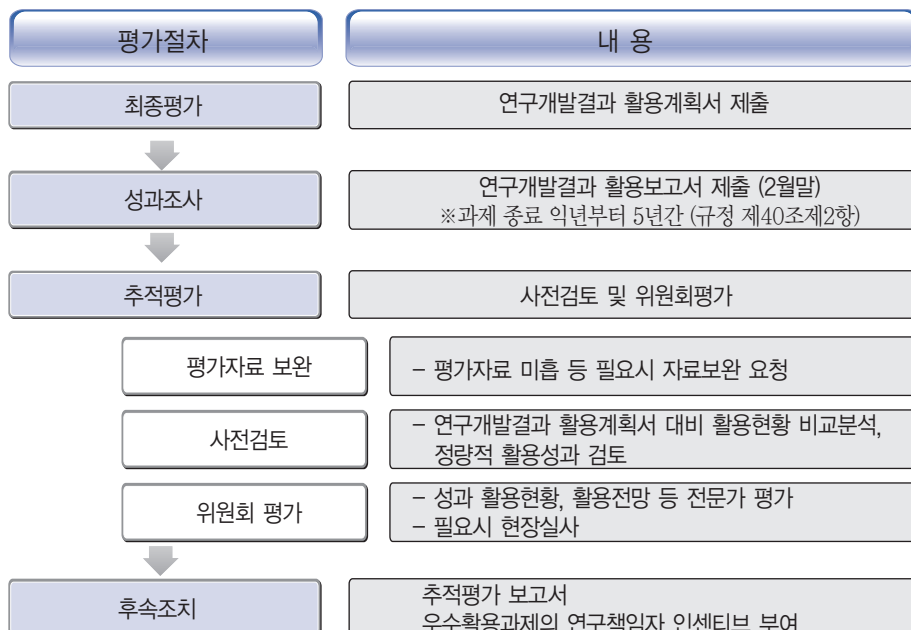
- 실용화 대상과제로서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제
 - ※ 중단과제, 실패과제, 기획연구과제, 타부처 주관과제,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추적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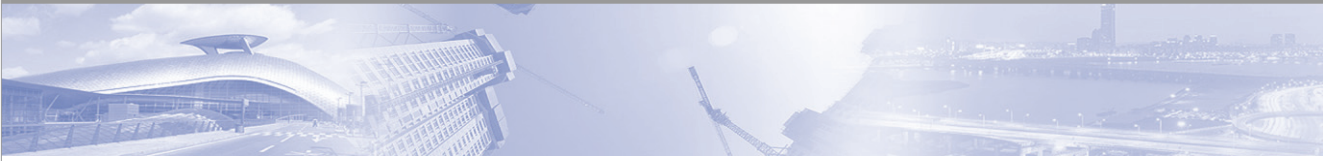
● 평가시기

-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3년 이내 실시



● 평가절차





● 평가항목

■ 사전검토

• 주요 검토내용

- 성과 활용도 및 주요 성과지표 사전검토
- 과제별 성과 달성도 상대비교
- 사업별 평가지표

• 위원회평가 대상과제 선정

- 추적평가를 수행하였던 과제의 평균성과를 산출하여 위원회평가 선정 기준으로 활용
- 실용화 추진중 또는 완료과제로서 공공적, 경제적, 기술적 효과 창출 과제를 선정
 - ※ 위원회평가에서 제외된 과제는 “활용미흡” 과제로 등급을 부여하고, 자체 검토
- 미활용 원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 2년간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재평가

● 위원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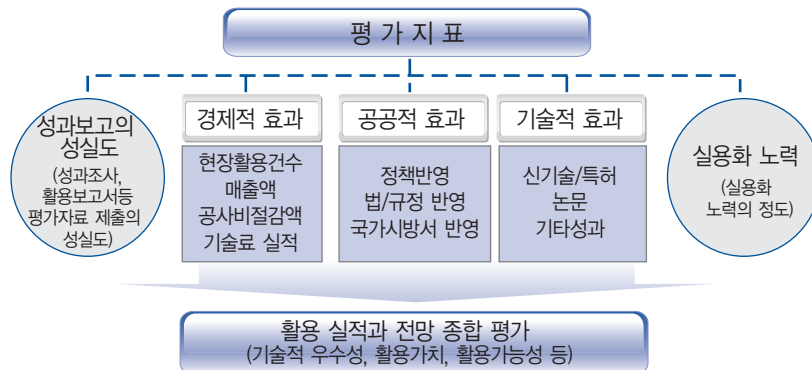
■ 사전검토 결과 검토 및 가중치 확정

■ 과제별 정량적인 연구성과, 기술적 우수성, 활용전망 등 평가

■ 평가결과 80점 이상 과제 또는 연구성과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에 대하여 현장실사

- 현장실사 후 최종 우수과제 선정 및 연구책임자 인센티브 부여

■ 위원회 평가지표



NO.	항 목	세부평가항목
1	현장활용건수	연구개발 결과물이 현장에서 활용된 건수(시험시공 포함)
2	매출액	기술이 사업화되어 발생한 매출액
3	공사비 절감액	설계반영, 현장적용에 따라 기존기술 대비 공사비 절감액
4	기술료 실적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료 징수 실적(자체실시 포함)
5	정책 반영	정책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실적 건수
6	법/규정 반영	법, 령, 규칙, 국가지침 등에 반영된 실적 건수
7	국가 시방서 반영	국가 시방서에 반영된 실적 건수
8	신기술/특허	신기술 지정 또는 특허 등록 건수(출원 제외)
9	논문	논문 게재 건수(학술발표 제외)
10	기타	소프트웨어, 학술회의, 후속연구 등

● 평가결과 활용

- 성과활용 우수 과제를 발굴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건설교통 R&D의 국민 경제적 기여에 대한 인식 제고
- 성과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과제의 그 원인 파악 및 적절한 조치
- 연구개발자 스스로 R&D 기획단계부터 성과의 활용을 고려하여 연구를 하도록 유도
- 평가결과가 우수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향후 3년간 신규과제의 총괄연구 책임자로 참여시 가점(90점 이상 2점, 80점 이상 1점)



PART

VI



성과확산

I. 성과확산 개요

II. 성과홍보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VI
성과확산

제6장 | 성과확산

I 성과확산 개요

1.1. 관련법규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제5항
 -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

1.2.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도출된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널리 알리고 활용토록 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1.3. 성과확산 절차 및 방법

- 성과확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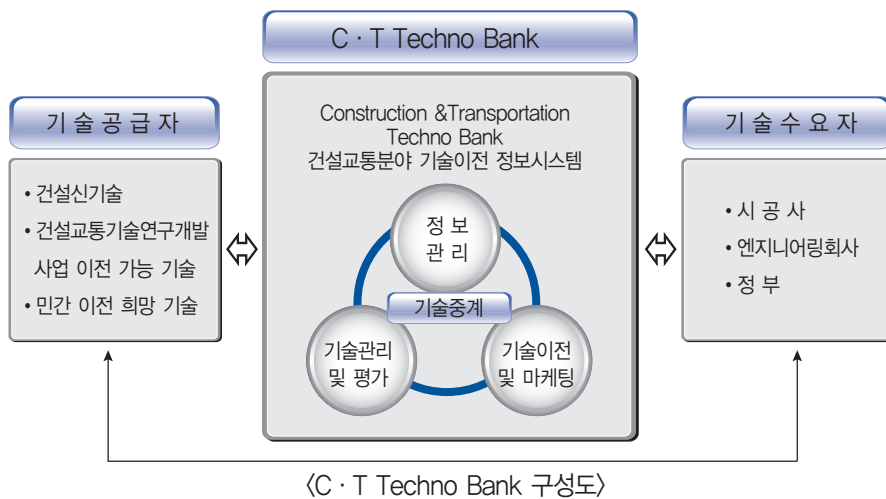
- 연구개발성과 수집
 - 분기별 성과조사, 국과위 조사·분석, 연구성과활용보고서
- 연구개발성과 온라인 등록
 - 홈페이지 연구과제정보 및 주요연구성과 (<http://www.kictep.re.kr>)
 - 연구포탈서비스(<http://www.ctpass.kictep.re.kr>)
 - 건설교통기술 은행(C·T Techno Bank) (<http://techbiz.kictep.re.kr>)
- 추적평가 및 우수 연구성과 발굴
- 성과 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 성고충람집 발간 배포

Ⅲ 성과홍보

2.1. 건설교통기술 은행(C·T Techno Bank)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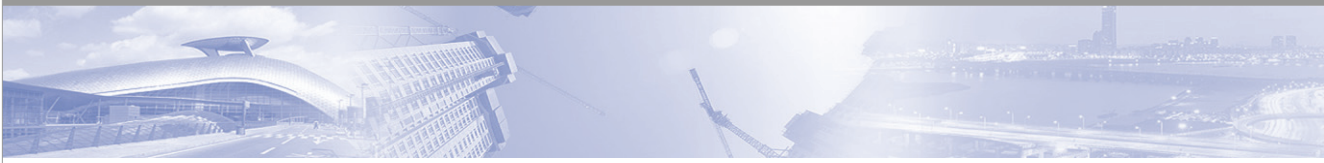
● 개요

- 건설교통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비롯해 건설 신기술, 기타 국내외 기관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 운영목적

-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 기술이전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정보화



● 서비스 내용

■ 기술검색

- 기술형태별, 기술등급별, 기술보유기관별, 기술분야별

■ 기술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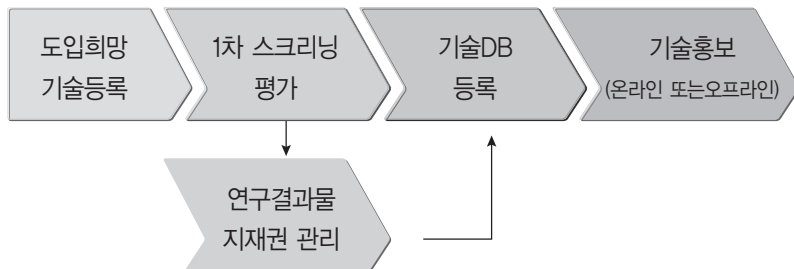
- 사용처를 찾고 있는 보유기술(사용희망기술) 또는 투자 사업화할 기술(도입희망기술)에 대하여 기술명, 기술특징 등을 온라인에서 등록

■ 공동연구 등록 및 검색

- 공동연구를 같이 할 연구기관 검색

● 기술등록 방법

■ 사용희망기술 등록 : 보유한 기술의 사용처를 찾을 때



■ 도입희망기술 등록 : 투자 또는 사업화할 기술을 찾을 때



2.2. 성과총람 발간

● 개요

- 건설교통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과제의 성과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요 성과를 홍보하고자 발간하는 책자로 연1회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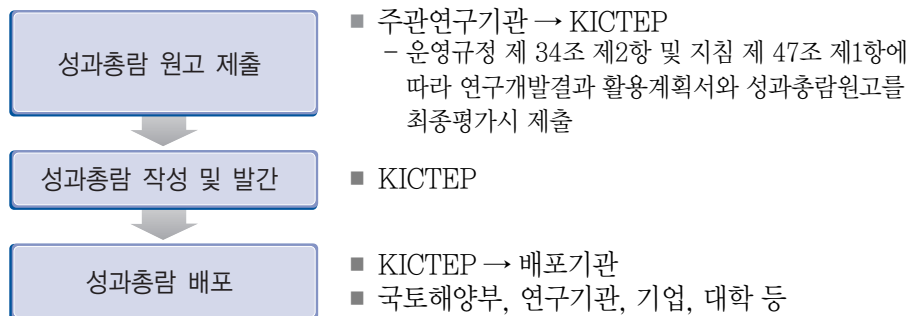
● 발간목적

- 건설교통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내용 홍보 및 활용촉진(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

● 구성내용

- 과제기본정보(연구기관, 참여기업, 연구자정보, 연구기간 등)
- 연구배경, 연구목표
- 주요연구내용
- 연구개발결과
- 연구개발성과(공공적, 기술적, 학술적, 경제적 성과)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등
 - ※ 가급적 사진, 그림 등 시각적 자료 활용

● 성과총람 발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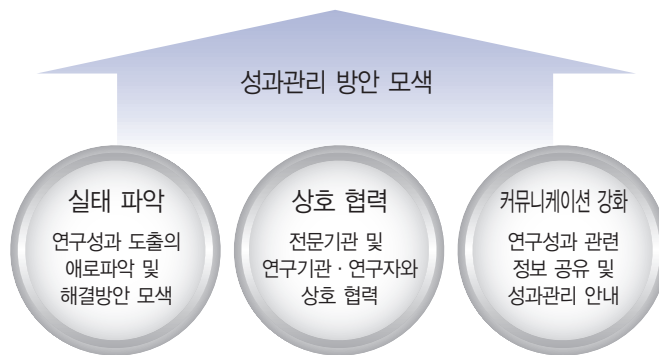


2.3. 성과관리협의회 운영

● 운영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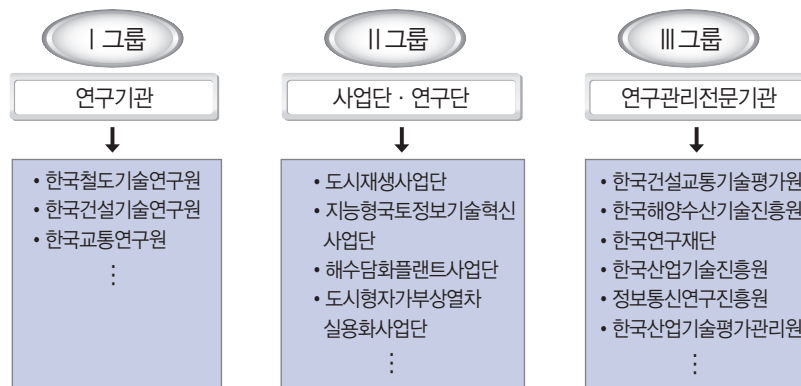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가 성과중심으로 이동하고 성과확산이 강조되는 등 변화하는 외부환경을 고려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
- 사회적 · 공공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주체간 상호 협력적 관계 구축
- 연구관리 전문기관, 연구기관, 사업단 또는 연구단 등 연구성과를 창출 · 관리하는 주체간의 커뮤니케이션 향상
- 연구성과의 질적향상을 위한 연구현장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과 해결 방안 모색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합리적 관리 및 운영



● 협의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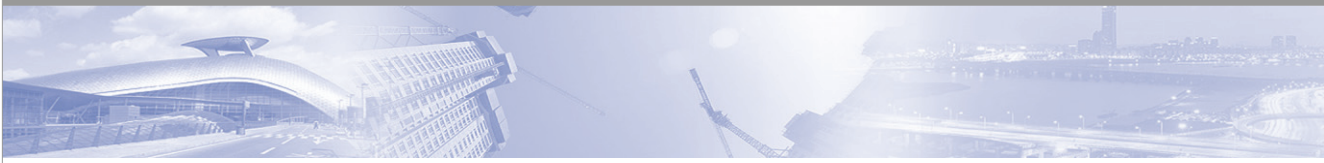
- ‘성과관리협의회’는 건설교통분야의 대표적 출연 연구기관, 장기·대규모의 사업단·연구단과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성과관리 담당자로 구성



건설교통기술 연구개발성과 관리의 효율성 증대

● 협의회 역할

- 성과관리 체계의 정립 및 효율적 관리 방안 모색
 -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성과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체계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 도출
- 성과관리의 주체성 확립 및 전문성 강화
 - 전문기관, 연구기관, 사업단 등 성과관리 주체의 역할 확립과 지식재산권, 논문 등 연구성과의 질적 평가를 위한 전문성 확보
- 성과관련 정보 전달 및 확산의 매개체
 - 전문기관에서 전달하는 각종 성과관련 정책변동 사항 및 정보를 연구자에게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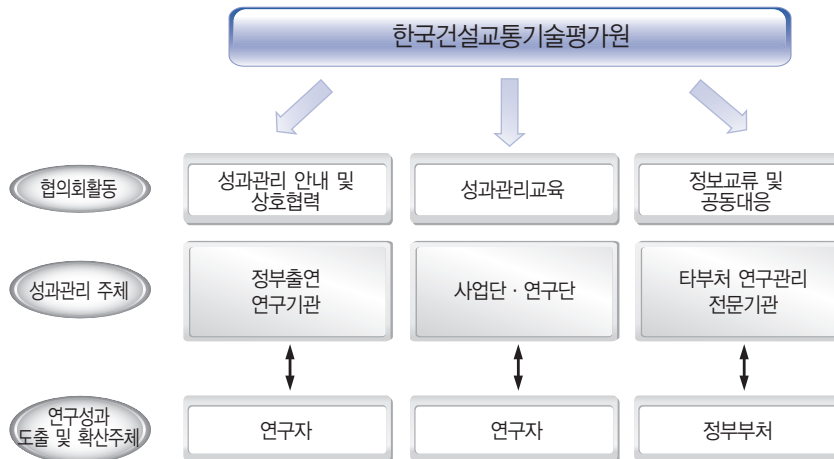
● 성과관리 제도개선 및 안내

■ 목적

- 성과관리 및 평가관련 제도 제·개정시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 연구개발사업 관련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

■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안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제안
-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 제안
- 기타 연구자에게 필요한 성과 관련 사항



■ 안내방법

구분	안내방법
온라인	◆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 개재 ◆ 연구책임자 또는 기관별 연구관리자에게 이메일 발송 ◆ SMS문자 안내(필요시)
오프라인	◆ 안내책자 또는 팸플릿 제작 배포 ◆ 교육(연구책임자 및 연구관리자) ◆ 지역별 설명회(서울, 대전, 부산 등) ◆ 상담 ◆ 성과관련 Q&A제작 배포 등

2009 www.kictep.re.kr
성과관리매뉴얼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



별첨

Contents

[별첨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성과부분발췌)	82
[별첨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91
[별첨 3]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성과부분발췌)	98
[별첨 4]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성과부분발췌)	106
[별첨 5]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작성요령	112
[별첨 6] 지식재산권 · 논문 · 제도 등 인정기준	121
[별첨 7] 공동 성과지표 인정기준	126
[별첨 8] 기술실시 계약서	133
[별첨 9]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138
[별첨10]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139
[별첨11]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140
[별첨12]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141
[별첨13] 기술료 감면 신청서 및 의견서	142

[별첨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성과부분 발췌)

제12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3. 8>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5. 27>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8.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장비 현황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결과 중 보안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8, 2007. 2. 8, 2008. 5. 27, 2008. 12. 31>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결과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구개발결과에 해당되지 아니한 연구개발결과
- ④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의 서식 및 제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3. 8, 2008. 2. 29, 2008. 5. 27>

제13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와 연구성과 활용 계획·실적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개정 2005. 3. 8, 2008. 5. 27, 2008. 12. 31>
- ②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 3. 8, 2008. 5. 27, 2008. 12. 31>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시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7>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8, 2008. 5. 27>
- ⑤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7. 2. 8, 2008. 5. 27, 2008. 12. 31>

제14조 (평가에 따른 조치)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8, 2007. 2. 8>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간평가·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 3. 8, 2008. 5. 27, 2008. 12. 31>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7. 2. 8>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2. 당초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2. 8>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2. 8, 2008. 5. 27>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종합하여 일정 시기별로 연구개발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07. 2. 8>
- ⑦ 제4항에 따른 후속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3. 8, 2007. 2. 8, 2008. 2. 29>

제14조의2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연구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2. 8, 2008. 5. 27>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배포·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5. 27>
[본조신설 2005. 3. 8]

제15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7, 2008. 12. 31>

-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2009. 4. 30>
- ⑥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7. 2. 8, 2008. 5. 27, 2008. 12. 31>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 ⑦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5. 3. 8, 2007. 2. 8, 2008. 5. 27, 2008. 12. 31>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8, 2007. 2. 8>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8, 2008. 12. 31>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5. 연구개발내용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 컴퓨터,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조치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7. 2. 8, 2008. 2. 29>
- ⑤ 제4항의 기준과 절차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12. 31>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7. 2. 8, 2008. 5. 27, 2008. 12. 31>

제16조의2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7>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정보관련 정책에 따라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및 조정의 결과와 각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하며, 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5. 27>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연구개발정보 및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5. 27, 2008. 12. 31>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5. 27>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5. 27>
[본조신설 2005. 3. 8]

제17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8, 2008. 12. 31>
-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경우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27>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 ⑤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2. 8, 2008. 12. 31>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의 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5. 3. 8, 2007. 6. 29, 2008. 5. 27>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영리법인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중 소유하고 있는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리법인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그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12. 31>
- ④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7, 2008. 12. 31>
- ⑤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 감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 2. 8, 2008. 12. 31>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당사자간에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제19조 (기술료의 사용)

-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②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정부출연금 지분의 30퍼센트 이상: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정부출연금 지분의 35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관리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비영리법인 소속의 연구원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보상금
 2.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운영경비
 3. 기술확산에 기여한 연구기관 소속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제5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에 산입·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8, 2006. 12. 29, 2008. 5. 27, 2008. 12. 31>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1>

제19조의2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한 지침의 마련·제공)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할 때에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연구윤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
 2. 전문기관,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역할과 책임
 3.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 및 방법
 4.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5.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
 6. 연구수행 과정에 대한 기록 등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2. 8]

제19조의3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관련 조치 등)

-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윤리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따르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윤리지침을 반영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②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절차에 따라 그 검증을 하고 통보를 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2. 8]

[별첨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1. “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성과목표”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5. “성과지표”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6. “성과평가”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7. “특정평가”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8. “연구성과”라 함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제3조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 과제 및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연구성고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등)

- ① 이 법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06. 12. 28>
- ③ 다른 법률에서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평가계획의 마련)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이하 "성과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1.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 2. 성과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5. 성과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6. 성과평가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 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평가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6조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사업 등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연구개발사업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방향·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자체성과평가에 사용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2. 자체성과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공정성 등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⑥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자체성과평가의 실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평가의 대상이 아닌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자체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성과평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포함하는 연간 연구성과
 2. 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단계 또는 중간 연구성과
 3. 최종 연구성과
 4.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5년간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추적평가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성과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다른 평가와의 관계)

- ① 삭제 <2006. 9. 27>
- ②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초법」 제32조제2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결과의 활용)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 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연구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적절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창출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 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기본방향
 2. 특허, 논문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활용방법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8>
- ④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마련)

- ①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6. 12. 28, 2008. 2. 29>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평가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계획의 마련 여부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성과의 관리·활용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범위 및 마련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원)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훈련)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의 역량 향상과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성과평가의 전문가·담당자 및 연구성과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지침의 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평가예산의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20조 (권한의 위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간사 또는 같은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별첨3]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성과부분발체)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관리

제33조(진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도보고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4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당해 연도 협약 종료 45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제24조에 따른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종료 60일 전까지 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마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과 결과
 4. 목표달성도와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관리와 활용 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국내·외 타 연구개발결과와의 연계가능성 검토 결과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장비현황
-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개발결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안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안 관리하여야 한다.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직결되는 연구개발결과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 추진 중인 기술이나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

4.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결과
 5.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구개발결과에 해당하지 아니한 연구개발 결과
-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차(단계)실적·계획서나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연구개발결과의평가)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속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실적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제24조에 따른 다년도 협약 과제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대로 단계 실적·계획서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실적에 대하여 단계평가를 한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실적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할 수 있다.
- ③ 장관이 국가안보상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평가를 아니 할 수 있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의 규모·특성, 과제의 개수, 평가시기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사업화 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기술적 효과 등을 평가(이하 “추적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 ⑦ 전문기관의 장은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평가에 따른 조치)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절대평가의 경우 평가점수가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과제, 상대평가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과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태를 점검하고 성실수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성실수행과제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으며, 불성실수행 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의 보안을 위해 추가연구개발을 요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 연구개발결과 보완 후 재평가를 하여 별표 3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를 정밀정산 하고,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라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35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비 우선지원, 우수결과물에 대한 기술창업 및 사업화 지원 등의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7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보고서 발간 배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나 그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여야 하며, 배포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와 요약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를 배포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문기관의 장이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기술보호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나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8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갖추어야 하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 기획연구보고서
 2. 연구개발과제의 기본정보, 진도관리 및 연구개발비 관리 정보
 3. 전문가 명부
 4. 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5.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요약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
 6.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7. 국토해양기술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등 관련기술정보
 8.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거나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정보의 공유와 공동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취득·도입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나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장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제39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 결과물을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장관은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 ⑤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 결과물을 전문기관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⑥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이나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값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42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 ⑦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나 등록신청서, 출원이나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이나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 연구개발 과제명 등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맺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연구개발 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활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 연구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 실시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나 기간에 관계없이 기술이전이나 기술실시가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 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기술실시계약)

-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납부금액, 납부시기 등을 포함한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경우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제3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기술실시계약을 맺은 기업에도 따라서 쓴다.
- ⑤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술료로 받는 금액·방법·기간 등 기술실시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기술료

징수·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계약의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42조(기술료의 징수)

- ①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기술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술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 기술료를 받는 금액·방법·기간이나 기술이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 등은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간의 협약에 따라 결정한다.
-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받는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43조(기술료의 감면)

-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 조정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 정부출연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전부를 기술실시계약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조기 납부하는 경우 :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별 감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44조(기술료의 사용)

-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받은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을 별표 4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비영리법인 소속의 연구원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보상금
 2.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운영경비
 3. 기술확산에 기여한 연구기관 소속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③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4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와 제42조제3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
 2.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
 3.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
 4.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기금에 납부
- ④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기술료 사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장관은 기술료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기술료사업을 할 수 있으며, 기술료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사용하는 경우 기술료 사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6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당해연도 기술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사용계획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마련)

-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제23조에 따른 협약체결 시 정한 바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 또는 기탁받은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별첨4]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성과부분발췌)

제41조(연구성과 발표회 등)

- ① 연구단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성과에 대한 성과(중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 제37조에 의한 전문기관 주관의 성과발표회 참여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중간) 발표회 등을 개최하려면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중간) 발표회 등을 개최한 경우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1조(활용실적 조사)

-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계속과제 또는 종료과제의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결과 활용실적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과제의 경우 활용실적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획, 정책과제
 2. 실패, 중단과제
 3. 당해 연도 신규 협약과제
 4. 과제가 끝난 다음해 부터 5년이 경과한 과제
 5. 그 밖에 활용실적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장이 인정하는 과제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실시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활용실적 조사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7조제3항 및 운영규정 제4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과제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과제가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제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⑤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6 성과물 인정기준을 활용실적 조사시 적용할 수 있다.

제52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촉진)

-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가 운영규정 제39조와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경우 소유권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소유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식재산권 등 연구 성과물을 거두어들여 기술거래, 기술공개, 후속연구 수행에 활용 등 연구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기술료 계약, 징수 및 사용 기준을 따른다.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기술실시계약)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실용화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2.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
 3.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 결과물 등 과제의 특성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이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보고서 1부 및 기술 실시계약서 3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기술실시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5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고정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중에서 징수방식을 정하여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운영규정 제42조제1항의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최종으로 받은 기술료가 정부출연금 이하가 되어도 올바르게 처리된 것으로 본다.
 1. 연구개발 결과물의 일부만 활용하는 경우
 2. 과제 수행중 발생한 중간성과를 활용하는 경우
 3. 통상실시권과 관련된 기술실시계약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법으로 기술료를 받는 경우
 4. 통상실시 또는 전용실시와 관련하여 정부출연금 이하로 고정기술료를 받고 정해진 기간 동안 경상기술료를 받는 경우
 5. 여러 기관이 기술을 공동사용하면서 내는 기술료의 합이 정부출연금 이상인 경우
 6. 운영규정 제40조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③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영리기관과 경상기술료로 계약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기술료를 받아야 한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소유하도록 연구개발협약을 맺은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중소기업은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기술료 및 매출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상기술료
 2.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지 않은 실시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경상기술료
- ④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기술료 징수결과 및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기술료 사용실적(해당연도 기술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기술료 사용 계획서 포함)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 ① 운영규정 제43조제1항의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감면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연구결과물을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2. 기술의 수요처가 한정되어 있어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계약하기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장관이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간별 고정기술료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내는 경우 : 내야할 기술료의 30%

- 2. 2년 이내에 현금으로 내는 경우 : 내야할 기술료의 20%
- 3. 3년 이내에 현금으로 내는 경우 : 내야할 기술료의 10%
-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1. 기술료의 감면 여부
 - 2.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사유의 타당성
 - 3. 기술료사용 계획 수립
 - 4. 기타 기술료의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6조(기술료사업)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4조제4항에 따라 기술료사용 수요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4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기술료사용기관(이하 "기술료사업자"라 한다)의 선정, 협약, 평가, 정산 등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사업의 절차를 따라서 쓸 수 있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료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기술료사업자는 사업을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료사업비 사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용한 금액 중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료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⑤ 기술료사업자는 기술료사업비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7조(추적평가 대상 및 시기)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운영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추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추적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기획, 정책과제
 - 2. 실패, 중단과제
 - 3.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한 다른 부처 주관사업

4. 연구기관의 부도, 폐업 등 평가대상의 소멸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추적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②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종료과제 대상으로 과제종료 후 3년 이내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상 실용화에 장기간이 걸린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8조(추적평가 자료 접수)

-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과제의 성과활용 책임자에게 추적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 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자료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평가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제59조(추적평가위원회 구성)

- ① 평가위원회는 사업별, 과제의 특성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③ 평가위원 선정 시에는 다음의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에 참여한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된 자

제60조(추적평가 방법)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추적평가는 과제별, 위원별 서면심사를 통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표평가 또는 현장실사를 함께 할 수 있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추적평가의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적평가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1조(추적평가결과의 활용)

- ① 평가결과 90점 이상의과제에 “매우우수”, 80점 이상의 과제에 “우수” 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는 선정평가시 별표 1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다.
- ② 추적평가 결과 성과활용이 우수한 과제(80점 이상) 및 특별히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④ 현장실사 위원은 추적평가에 참석한 위원중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별첨5]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작성요령

〈공문제출시 참고〉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완료한(연구개발 중인)

과제에 관한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1부.

20 . . .

총괄책임자 : (인)

주 관 기 관 : 직 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귀하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사 업 명		과 제 번 호	
과학기술표준분류		전 문 분 야 분 류	
과 제 유 형	☐ 기초 ☐ 응용 ☐ 개발	실용화대상여부	☐ 실용화 ☐ 비실용화
최 상 위 과 제 명		과 제 구 분	☐ 일반 ☐ 연구단 ☐ 사업단
(핵심세부)과제명			
주 관 연 구 기 관		연구책임자	
총 연 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총 연 구 개 발 비 (단 위 : 천 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협 동 연 구 기 관			
참 여 기 업			
구 분	성과활용책임자	성과활용실무자	
성 명			
소 속 기 관 / 부 서			
E - M a i l			
연 락 처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제2항에 의거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이후 이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개요

연구개발 최종목표	
연구개발 개요	

2. 연구개발 결과물

2-1. 연구개발 결과(핵심기술 개발 내용)

기술명	
기술개요	
기술 실용화단계	☐ 실용화 진행 ☐ 실용화 완료 ☐ 실용화 보류 ☐ 실용화 중단 ☐ 비대상 [세부내용]
기술 수명주기	☐ 기술개념 정립기 ☐ 기술 실험기 ☐ 기술적용 시작기 ☐ 기술적용 성장기 ☐ 기술적용 성숙기 ☐ 기술적용 쇠퇴기
관련 연구개발 성과 (지재산 등)	
기대효과	

※ 기술별로 작성하되, 여러 기술일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2-2. 연구개발 성과

구 분			실적(건)
공공적 성과	법 제정 및 개선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반영		
	정책제안		
	정책채택		
기술적 성과	특허	출원	
		등록	
	실용신안	출원	
		등록	
	디자인	출원	
		등록	
	소프트웨어(S/W)		
	기타 성과(상표, 서비스 등)		
학술적 성과	신기술 지정		
	국내외 학술지 게재	일반 학술지	
		SCI(E)학술지	
경제적 성과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기술실시계약		
	사업화/제품화		
	현장적용에 의한 비용절감		

3. 주요 연구개발 성과 활용실적

구 분	활용목적	활용계획	활용실적
공공적 성과			
기술적 성과			
학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기타 성과			

연구개발 성과 세부 현황

■ 공공적 성과

○ 법 제정 및 개선

순 번	구 분	활용구분	명 칭	시행일시
1				
2				

○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순 번	구 분	활용구분	설계기준/시방서/지침 명칭	제안일시
1				
2				

○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반영

순 번	구 분	활용구분	설계기준/시방서/지침 명칭	반영일시
1				
2				

○ 정책제안

순 번	시책명(제안명)	담당부처 · 팀	제안일시	제안내용
1				
2				

○ 정책채택

순 번	시책명	담당부처 · 팀	시행일시	채택내용
1				
2				

■ 기술적 성과

○ 특허

순 번	출원/등록 구분	특허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1						
2						

○ 실용신안

순 번	출원/등록 구분	실용신안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1						
2						

○ 디자인

순 번	출원/등록 구분	디자인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1						
2						

○ 소프트웨어(S/W)

순 번	S/W명칭	창작일	등록일	등록번호
1				
2				

○ 기타성과상표, 서비스 등)

순 번	구 분	출원/등록구분	명칭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1							
2							

■ 학술적 성과

○ 국내외 학술지 게재

순 번	SCI(E)/일반학술지 구분	학술지명	논문제목	게제일
1				
2				

○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순 번	국내/국외 구분	학술회의 명칭	학술회의 개최국명	발표일
1				
2				

■ 경제적 성과

○ 기술실시 계약

순 번	기술실시계약 명칭	기술실시계약체결일	실시기업명	징수금액(천원)
1				
2				

○ 사업화 / 제품화

순 번	사업화명	업체명	사업화 형태	매출액(백만원)
1				
2				

○ 형장적용에 의한 비용절감

순 번	R&D기술 적용현장명	공사기간(시작일~종료일)	시공업체명	총 비용절감액(천원)
1				
2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작성요령

■ 과제정보

- (1) 사업명 : 연구개발협약서의 사업구분에 기재된 사업명
- (2) 과제번호 :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과제번호를 기입
- (3) 과학기술표준분류 :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기술분야명 기입
- (4) 전문분야분류 : 다음 표를 참고하여 코드번호 기입

대분류	중분류	
	코드번호	기술
1. 토목기술	11	토목구조기술
	12	토목재료기술
	13	지반기술
	14	토목환경기술
	15	수리수문기술
	16	교통시설기술(도로, 공, 철도, 항만)
	17	측정 및 계측기술
	19	기타토목기술
2. 건축기술	21	건축계획 및 설계기술
	22	건축구조기술
	23	건축재료기술
	24	건축시공 및 유지관리기술
	25	건축환경기술
	26	건축방재 및 안전기술
	29	기타건축기술
3. 설비기술	31	기계설비기술
	32	전기설비기술
	33	건설기계 및 장비기술
	35	플랜트 설비기술
	39	기타설비기술
4. 건설일반	41	건설사업관리
	42	건설관리정보화
	43	건설제도정책
	44	건설기술정보
	49	기타건설일반

(5) 과제유형

기초	- 자연현상의 원리규명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지식을 획득하는 연구
응용	- 이미 알려진 지식을 심화·발전시켜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특정 상황에 적용하여 활용하는 연구
개발	- 실용적이고 유통 가능한 (시)제품, 물질, 장치 또는 제품의 공정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6) 실용화대상여부

실용화 과제	- 사업화/제품화, 지식재산권 취득 및 기술이전의 형태로 실용화가 가능한 과제
비실용화 과제	- 인프라구축 및 정책과제, 기획과제 등과 같이 사업화/제품화, 지식재산권 취득 및 기술이전의 형태로 실용화할 수 없는 과제

- (7) 최상위 과제명 :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간의 협약서에 기재된 연구개발과제명
- (8) 연구개발과제명 : 연구개발협약서상의 연구개발과제명
- (9)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협약서상의 주관연구기관명과 일치하도록 기재
- (10)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협약서상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성명
- (11) 연구기간 : 연구개발협약서 상의 연구기간 기재
- (12) 총연구사업비 : 연구개발협약서 상에 기재된 정부출연 연구비와 기업부담금(민간부담금), 그리고 이의 합계인 총액을 각각 기재
- (13) 협동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 외에 다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14) 참여기업 : 연구개발협약서상의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과제에 참여한 기업
- (15) 성과활용책임자 :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 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성과 활용을 목표로 하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 (16) 성과활용실무자 : 성과활용책임자와 함께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술이전 등 활용에 필요한 실무를 수행하는 자

1. 연구개발 개요

- (1) 연구개발 최종목표 : 연구개발이 종료될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연구개발과제 요약서와 동일하게 작성
- (2) 연구개발 개요 : 연구개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연구내용으로 연구개발과제 요약서와 동일하게 작성

2 연구개발 결과물

2.1 연구개발 결과(핵심기술 개발 내용)

- (1) 기술명 : 연구개발 성과로 얻어진 기술명
- (2) 기술개요 : 개발동기 및 목적, 기술내용,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적용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3) 기술 실용화단계 : 해당되는 실용화 진행 단계에 체크
- (4) 기술수명주기

기술개념 정립기	기술 및 제품의 실용화를 위한 개념 정립
기술 실험기	시제품 및 시범적용을 통해 시장성을 갖도록 개선중인 기술
기술적용 시작기	기술 및 제품의 매출은 미약하지만 시장 형성중인 기술
기술적용 성장기	시장이 형성된 상태에서 실제적인 필요 공급이 늘어나는 시기
기술적용 성숙기	기술적 개선은 미미하지만 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입원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
기술적용 쇠퇴기	기술 및 제품 개선 비용이 매출보다 높아 기술개발이 이루어 지지않는 시기

- (5) 관련 연구개발성과(지재권 등) :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과 시제품 및 사업화, 사업화에 의한 경제적 이익, 기술료 등 대표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술
- (6) 기대효과 : 연구개발 성과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 경제적 · 기술적 · 환경적 파급효과를 기술

2-2 연구개발성과

공공적 · 기술적 · 학술적 · 경제적 성과 지표에 대한 실적(건)

3. 주요 연구개발 성과 활용실적

활용목표 및 계획 : 연구개발 종료 시 수립한 성과활용 목표 및 계획

활용실적 : 법제정 및 개선,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 반영, 논문, 특허 등 계량화된 성과 외에 후속연구에의 활용 또는 기술이전, 해외투자 유치, 홍보 등 연구성과와 관련된 활동 및 실적을 기술

※ 「연구개발성과세부현황」은 연구포탈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만 인정됨.

[별첨6]**지식재산권 · 논문 · 제도 등 인정기준****1. 지식재산권 인정기준****▣ 지식재산권 인정기준**

- 연구시작 이전 지식재산권 출원이 발생한 경우 불인정
-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출원사실증명원, 출원번호통지서, 출원결정서, 특허출원서 중에서 선택하여 「출원 번호, 출원년도 및 일자, 출원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등록특허의 경우 특허등록원부 또는 특허증(사본) 제출 시 인정
- 등록원부 및 출원사실증명원은「<http://www.kiporo.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지식재산권 실적증빙 기준

- 공개 지식재산권
 - 출원시 : 출원번호, 출원년도 및 일자, 출원인을 양식에 따라 정확히 입력
 - 등록시 : 출원번호, 출원년도 및 일자, 출원인, 등록번호, 등록년도 및 일자를 양식에 따라 정확히 입력
- 비공개 지식재산권
 - 출원 증빙 : 특허출원사실증명원, 특허출원서, 출원번호통지서, 출원결정서 중 선택 등록 가능하나, 반드시 「출원번호, 출원년도 및 일자, 출원인」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 등록 증빙 : 특허등록원부, 특허증
 - 증빙 방법 : 위의 증빙서류를 PDF로 변환 또는 원본 스캔 파일로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

올바른 지적재산권 증빙 예제

등 록 시

[illegible][illegible]

출원시

접수번호 : S-5-2009-029316697 	
출원사실증명원	
CERTIFICATE OF APPLICATION	
출원인 Applicant	성명 Name 주 소 Residence No. 176271-*****
발명자 Inventor	전 출 번호 Resequence No. 053-950-6089 주 출 번호 Residence No. 760307-***** 전 출 번호 Resequence No. 053-950-5597 주 출 번호 Residence No. 630404-*****
	전 출 번호 Resequence No. 053-950-5597 주 출 번호 Residence No. 9-2002-000134-3
	대 리 인 Agent 이 건 형 이 건 형 대리인 코드 9-2002-000134-3
	특허청 등록번호 187-1호 크로아티아(영문) 특허청 등록번호 187-1호 크로아티아(영문)
출원 번호 Application Number	특허청 등록번호 187-1호 크로아티아(영문) PATENT-2008-0027130
출원 일자 Filing Date	2008년 03월 24일 MAR. 24, 2008
발명의(가)의 명칭, 디자인을 포함하는 발명, 유생물(세포식별) 표본 Title of Invention, Productivity Embodied in Design, or Classification of Mark	
출 원 도 확인용	IPC 분류 G09H 19/00
최 출 제 분 사 태	최 출 제 분 사 태
위 사실임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applicant has filed as stated in this certificate at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발급일자 : 2009.05.2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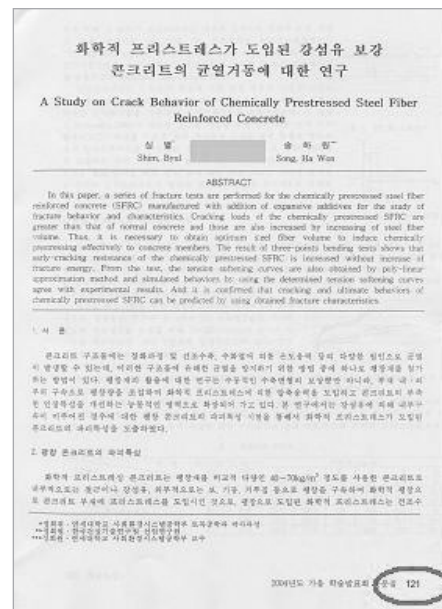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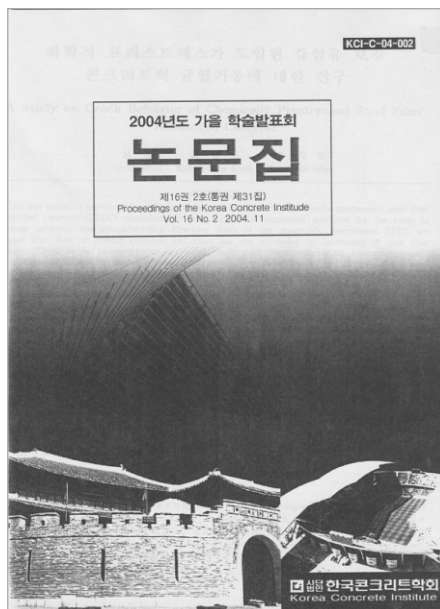
[illegible]

- Proceedings게재의 경우는 “학술지 게재” 건수에서 제외하고 학술회의 발표 실적으로 처리
- “○○학회 학술대회 논문집”은 학술회의 발표실적으로 처리
- 위의 사항과 관계없이 논문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논문게재로 인정하며 증빙자료에는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페이지가 표시되어야 함

■ 논문 증빙자료 등록시 유의사항

- 페이지가 명확히 보여야 함
(00-00으로 표기된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 반드시 pdf로 변환 또는 원본 스캔 파일로 등록
- 일부분이 아닌 해당 논문 전체 파일을 등록
- 논문 제목을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

☒ 올바른 증빙 예시



3. 법·제도/정책반영, 기술지도 인정기준

▣ 법·제도 인정기준

-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 반영 관련하여 법률명칭 및 조항, 시행일시, 개선내용 등이 자세히 기입되어 있고 타당하면 인정
- 평가지침, 안전지침, 안전관리지침 등 “규정, 지침” 반영과 관련하여 명칭 및 조항, 시행일시, 개선내용 등이 자세히 기입되어 있고 타당하면 인정
-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평가기준 등 “시방서, 기준” 반영과 관련하여 명칭 및 조항, 시행일시, 개선내용 등이 자세히 기입되어 있고 타당하면 인정
- 지침(안), 기준(안), 매뉴얼(안), 시방서(안) 등 국가정책, 법과 관계없이 연구결과물로 “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불인정
 - ※ 제출서류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 지침이 개정된 내용 전문 첨부시에만 인정, 발췌문이나 이미지는 불인정

▣ 국가정책 반영 인정기준

- 정책제안 : 연구수행 결과를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관련 정책자료를 해당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건의한 실적
 - ※ 제출서류 :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 건의한 정책자료 및 공문(서신, 이메일 인정) 등 사실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 정책채택 : 연구수행 결과를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관련 정책자료를 해당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건의 후 채택되어 해당 정책이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활용된 실적
 - ※ 제출서류 : 관보고시 내용, 해당 정책 관련부처나 유관기관에서 발간한 공식적인 자료 등
 - ※ 관보고시문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가능

▣ 기술지도 인정기준

- 대학교/대학원 강의, 학회주체 세미나, 연구수행에 따른 자문회의 등은 불인정
- 공무원 교육, 산학연간 기술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 기술상담, 현장기술지도는 인정

[별첨기]

공동 성과지표 인정기준

1. 국내 장·단기 연수지원 성과

인정기준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학술연구나 산업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국내 타기관에 참여 연구원을 파견함으로써, 연수를 지원한 실적 ■ 장기 : 2개월 이상 ■ 단기 : 2개월 미만
증빙자료	수료증, 교육비 납부영수증, 출장결과보고서 등 연수과정 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

2. 국내외 학술지 게재

인정기준	국내 학술지의 경우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SCI(Science Citation Index)상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SCI(E) 포함)
증빙자료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또는 SCI/SCI(E)에 등재된 학술지의 명칭 및 게재연도 확인이 가능한 논문 전문 ※ 국내학술지 등재 여부는 KCI(http://kci.go.kr)에서 검색가능하며, Accept가 아닌 Publish된 논문만 인정

3.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인정기준	국내 및 해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실적
증빙자료	학술회의 명칭, 발표연도 확인이 가능한 발표논문 전문 ※ Accept가 아닌 Publish된 논문만 인정

4. 국제공동연구

인정기준	해외 특정지역 내 연구기관 등과 국제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 실적
증빙자료	공동연구협약서, 공동연구결과 보고서 등 기관명 및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연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국제수요조사

인정기준	해당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개발예정인) 기술에 대해 외국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실적
증빙자료	출장신청서, 관련공문, 출장결과보고서 등 조사활동 목적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6. 국제위탁연구

인정기준	외국연구기관에 해당 과제의 일부를 위탁한 실적
증빙자료	국제위탁연구협약서

7. 국제인력교류(국내연구자 해외파견)

인정기준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학술연구나 산업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국내 참여 연구자를 외국연구기관에 파견함으로써, 인력을 교류한 실적
증빙자료	해외출장신청서, 관련공문, 연구보고서 등 파견기간, 파견연구원, 파견목적, 파견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해외기관 파견이 아닌 해외학술회의, 포럼 등 행사참석은 불인정

8. 국제인력교류(외국연구자 국내유치)

인정기준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학술연구나 산업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외국연구자를 국내연구기관에 유치함으로써, 인력을 교류한 실적
증빙자료	외국연구자 성명, 유치기간, 유치목적이 나타나 있는 국내 연구기관의 공식문서나 자문회의 회의록, 자문회의 참석요청 공문, 서신 등 외국연구자 유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9. 국제정보교환

인정기준	해당 연구과제의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외국 연구기관과의 정보교환 또는 자문의뢰 실적
증빙자료	대내외 관련공문, 해외연구기관에서 송부한 서신, 상호 양해각서 등 국제 정보교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교환시기 및 내용, 해당 해외연구기관을 확인하기 어려운 증빙자료는 불인정

10. 국제협약(MOU) 체결

인정기준	해당 과제에 의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외국연구기관과 국제협약을 맺은 실적
증빙자료	체결된 양해각서(국내 기관과의 MOU 불인정)

11. 국제회의, 학회, 워크숍, 심포지엄 등 신설(개최)

인정기준	국제회의(학회, 워크숍, 심포지움 등) 신설 및 개최를 통한 연구개발 정보 교류 실적
증빙자료	공문, 사진, 포스터, 발표자료 등 행사주관 또는 참여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 ※ 신설 또는 개최가 아닌 행사 단순방문은 불인정

12. 기술무역

인정기준	기술원조, 플랜트 수출, 특허료 등의 일정한 대가를 받거나 주고 국내기술을 외부로 수출하거나 외국기술을 내부로 수입한 실적
증빙자료	기술거래 기관 및 시기, 내역, 거래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3. 기술실시계약

인정기준	연구개발 결과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과 실시기업간에 기술실시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실시에 대한 대가로 징수한 기술료 실적
증빙자료	기술실시계약보고서,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 계약서 사본

14. 기타 성과(상표, 서비스 등)

인정기준	해당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국내 및 국외에서 지적재산권 행사를 위해 출원/등록한 상표, 서비스 등 실적
증빙자료	- 출원 : 출원사실증명원, 출원서, 출원번호통지서, 출원결정서 중 선택하되 출원인, 출원번호, 출원일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 등록 : 등록원부 또는 증서 사본 ※ 등록원부 및 출원사실증명원은「 http://www.kiporo.go.kr 」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15. 디자인

인정기준	해당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국내 및 국외에서 지적재산권 행사를 위해 출원/등록한 디자인
증빙자료	- 출원 : 출원사실증명원, 출원서, 출원번호통지서, 출원결정서 중 선택하되 출원인, 출원번호, 출원일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 등록 : 등록원부 또는 증서 사본 ※ 등록원부 및 출원사실증명원은「 http://www.kiporo.go.kr 」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16. 법제정 및 개선

인정기준	연구개발 결과를 이용하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고시 등을 신규 제정하거나 기존내용을 개선한 실적
증빙자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고시, 지침이 개정된 내용 전문 ※ 발췌문이나 이미지는 불인정

17. 사업화/제품화

인정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 창원지원 또는 기존업체에서 상품화 등에 성공한 실적
증빙자료	국가 조달 규격을 통과한 시험성적서, 품질인증서, 업체에 납품한 실적증명서, 현장에 반입한 증빙자료, 제품이미지 및 설명서 등

18. 산학연간 기술지원

인정기준	산학연간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과정 중이나 완료 후에 현장기술지도, 기술상담, 교육훈련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개발내용으로 기술지원된 실적
교육훈련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통하여 개발기술에 대해 교육한 실적
기술상담	기술상담(자문)을 수행한 실적
현장기술지도	연구원 파견 등을 통해 현장애로사항을 해소해 준 실적 ※ 대학교(원) 강의, 연구수행을 위한 자문회의, 연구기관 자체 세미나, 학회 주최 세미나 등은 불인정
증빙자료	기술자문회의 개최공문, 참가자 서명이 포함된 회의록, 자문내용이 포함된 서신, 교육훈련 개최 또는 참석요청 공문, 현장파견 출장신청서 등 기술지원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

19.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반영

인정기준	연구개발 결과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반영(신규작성, 개선)된 실적
증빙자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지자체 등 발주청에서 제정하는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이 개정된 내용 전문, 한국산업표준(KS) 제·개정 내용 전문

20.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인정기준	연구개발 결과를 공공적인 목적으로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반영시키기 위해 제안한 실적
증빙자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지자체 등 발주청에서 제정하는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된 내용 전문, 한국산업표준(KS) 제·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신청서)

21. 소프트웨어(S/W)

인정기준	해당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국내 및 국외에서 지적재산권 행사를 위해 등록된 소프트웨어(S/W)
증빙자료	프로그램 등록증 ※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sors.or.kr)에서 검색되지 않으면 불인정

22. 시제품 출시

인정기준	- 기술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신제품의 실용화 및 상용화 여부 검증을 위하여 제작한 시제품 출시 실적 - 해당 과제의 중간 또는 최종 결과로 도출된 신제품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제작한 시제품 출시 실적
증빙자료	개발된 시제품에 대한 도면, 이미지, 동영상 자료 등

23. 신기술지정

인정기준	연구개발 결과에 대하여 각 신기술 지정부처로부터 신기술(NET, NEP)로 지정받은 실적
증빙자료	신기술 지정증서

24. 실용신안

인정기준	해당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국내 및 국외에서 지적재산권 행사를 위해 출원/등록한 실용신안
증빙자료	- 출원 : 출원사실증명원, 출원서, 출원번호통지서, 출원결정서 중 선택 하되 출원인, 출원번호, 출원일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 등록 : 등록원부 또는 증서 사본 ※ 등록원부 및 출원사실증명원은「 http://www.kiporo.go.kr 」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25. 연구개발관련 홍보

인정기준	-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대국민, 정부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지의 여부 - 학술회의, 간담회, 세미나, 워크샵, 박람회, 공청회 등의 개최 실적 또는 정기간행물 발간 실적 등 ※ 행사개최나 간행물 발간 등의 주체가 아닌 단순 참여는 실적이나, 대외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해당 과제 연구기관 내 자체 행사(워크샵, 세미나 등) 실적은 불인정
------	--

증빙자료	- 언론보도 : 신문이나 방송보도 이미지, 동영상, 인터넷 화면이미지 등 - 행사개최 : 개최공문, 팸플렛, 포스터, 브로슈어, 홍보관 사진이나 영상 자료 등 - 간행물발간 : 간행물 이미지와 홍보내용이 실린 페이지 이미지 등 - 기타 : 홍보매체 및 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26. 인력양성

인정기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 또는 참여 후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학위 논문을 작성함으로써, 새로운 학위를 취득한 실적
증빙자료	학위증 및 학위논문초록 ※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학위 논문 불인정

27. 정책제안

인정기준	연구수행 결과를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관련 정책자료를 해당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건의한 실적
증빙자료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에 건의한 정책자료 및 공문(서신, 이메일 인정) 등 사실확인이 가능한 자료

28. 정책채택

인정기준	연구수행 결과를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관련 정책자료를 해당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건의 후 채택되어 해당 정책이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활용된 실적 ■ 전체채택 : 제안내용이 전부 최종 채택된 경우 ■ 부분채택 : 제안내용의 일부만 최종 채택된 경우 ※ 연구수행 결과가 반영된 구체적인 국가정책을 제시하는 경우만 인정
증빙자료	증빙자료 : 관보고시 내용, 해당 정책 관련부처나 유관기관에서 발간한 공식적인 자료 등 ※ 관보고시문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가능

29. 특허

인정기준	해당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국내 및 국외에서 지적재산권 행사를 위해 출원/등록한 특허
증빙자료	- 출원 : 출원사실증명원, 출원서, 출원번호통지서, 출원결정서 중 선택하되 출원인, 출원번호, 출원일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 등록 : 등록원부 또는 증서 사본 ※ 등록원부 및 출원사실증명원은「 http://www.kiporo.go.kr 」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30. 현장시험

인정기준	- 기술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신기술의 실용화 및 상용화 여부 검증을 위하여 실시한 현장시험, 시험시공, 시범사업 수행 실적 - 완성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이전에 신기술의 검증차원에서 수행한 현장시험 실적
증빙자료	현장시험 협조요청 공문, 현장시험 실시계획 내부공문, 현장시험 사진이 포함된 시험결과보고서, 시스템 적용 결과보고서 등

31. 현장적용에 의한 비용절감

인정기준	- 최종 연구개발 결과를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존 기술 대비 직접적인 비용절감효과를 경제적 측면에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여 제시 - 연구개발 결과가 적용된 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비용절감효과는 향후 예측치가 아닌 적용현장에 대한 실적치로 제시 ※ 기적용된 현장명이 없을 경우 불인정
증빙자료	- R&D기술에 대한 공사 또는 납품계약서, 납품내역서, 공사견적서 등 현장 또는 실제 운영중인 시스템에 투입된 비용 및 인원, 자재, 장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첨8]**기술실시 계약서**

- 연구개발과제명 :
- 연구 개발 비 : 원 (정부출연금 : 원, 기업부담금 : 원)
- 기술실시 계약명 :
- 기 술 료 : 원 (또는 매출액의 %)
- 계 약 기 간 : 년 (~)
- 계약당사자
 (갑) 주관연구기관 :
 (을) 실시기업(참여기업) :
 (병) 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의 장, 실시기업의 대표자(이하 “실시자”라 한다) 및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이 국토해양부 “○○○사업”으로 개발한 KNOW-HOW(이하 “기술”이라 한다)를 실시자가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라 함은 ○○○(특허명 및 출원 또는 등록번호 명시)을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생산하는 경우를 포함)·양도·기술이전·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활용”이라 함은 상기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활용일”이라 함은 최초의 매출발생일을 말한다.
4. “기술료”라 함은 기술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 (실시권의 내용)

- ① (갑)은 실시자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기술”(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특허권 포함)을 실시하는데 동의하여 “실시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실시권”은 기술을 이용한 제품생산, 원가절감(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등의 권리를 말한다.
- ③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동 실시권을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④ (갑)은 (을)이 “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 (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대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을)이 “기술”을 “국외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실시권의 포기)

(을)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을 사용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기술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의 실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기술료 납부)

[고정된 금액으로 산정한 기술료의 경우]

- ① (을)은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제2항의 기술료를 (갑)에게 납부한다. 본 조항은 제2조제4항에 따라 (을)이 “기술”의 일부를 포기할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 ② (을)은 계약체결시 기술료로 선금금 금 원정(W))을 (갑)에게 납부하고 잔금은 매년 분할 납부하되 납부금액과 일시는 다음과 같다.

1차	년	월	일	원(W)	)
2차	년	월	일	원(W)	)
3차	년	월	일	원(W)	)
4차	년	월	일	원(W)	)
5차	년	월	일	원(W)	)

※ 일시납, 분납(분납회수, 납부기간) 등 구체적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로 결정

[기술의 사용실적에 비례하여 산정한 기술료의 경우]

- ① (을)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매출액의 %를 (갑)에게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기술료의 계산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하여 당해 기술료를 익년도 3월말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 ③ 매출액의 계산은 국내 판매분의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순매출액의 계산은 ‘첨부’의 산출식에 의해서 계산한다.

※ 매출액의 산정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로 결정하고 상세 내역을 첨부

제6조 (산업재산권의 취득)

(갑)이 기술실시의 결과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을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 산업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개량기술의 실시권)

- ① (을) 또는 (을)의 임원 및 피용자가 기술을 개량·확장·대체 또는 추가발명(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하여 이를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을)은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을)이 취득한 산업재산권은 쌍방의 공동소유로 한다.
- ② 특약이 없는 한 (을)의 개량기술에 대한 실시권은 본 계약에 따라 설정되는 것으로 보고 (을)은 개량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신의성실의 의무와 자료협조)

- ① 본 계약의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또한 (갑)은 필요시 (을)에게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제9조 (보안의무)

(을)은 “기술”이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에는 (을)이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도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등)

- ①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을)의 생산능력이 제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을)이 “기술”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여 (을)이 이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기술”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을)이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갑)에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그 변경사항을 (갑)에게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및 제재조치)

- ① (갑)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은 기술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술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갑)이 인정하는 경우
 2. 기술사용의 개시 이후라도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사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이 기술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4.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기술의 사용 등 의무이행 여부를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을)은 계약 해지일까지의 기술료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3호의 경우 (병)은 (을)에게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명칭사용)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갑)의 동의 없이 광고, 판매 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주관연구기관(국토해양부 포함)”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권리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기술실시 과정에서 취득되는 제반 권리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협의를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제16조 (관련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기술료의 징수·사용·관리에 있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 지침」 등 관련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석)

- ①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본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 (을) 및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인)

(을) : (인)

(병) : (전문기관장)○○○원장 (인)

[별첨9]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영리기관 자체실시)

사업명					
총괄과제명 (세부과제명)	()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총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활용기술명					
자체실시자	상호명		기업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주소		전화번호		
성과활용일					
기술료 총액(천원)					
기술료산정 방법	기술료 감면 여부(일시납, 중소기업, 기타)				
기술료 납부 계획	구분		매출(예상)		기술료(예상)
			일자	매출액(천원)	일자 납부금액(천원)
	고정기술료				
	경상 기술료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계				
관련 성과물	※ 관련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노하우, 판권 등				
기타 특기사항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에 의거 연구개발성과를 자체실시하고자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

(직인)

[별첨10]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사업명					
총괄과제명 (세부과제명)	()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총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자	상호명			기업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주소			전화번호	
기술실시계약일			실시기간	~	
기술실시계약형태	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기타()				
기술료징수방법	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혼합기술료()				
기술료 총액(천원)					
기술료 계획 (단위: 천원)	구분	징수계획		전문기관 납부 계획	
		징수예정일	금액	납부예정일	금액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계				
관련 성과물	※ 관련 특허,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노하우, 판권 등(증빙자료 별첨)				
기타 특기사항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기술실시계약서 3부

2. 기술료 산정 방법 및 근거서류 1부.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

(직인)

[별첨11]**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 실시기업별 작성

과제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명	
	연구책임자	
계약내역	계 약 명	
	실 시 기 업	
	계 약 기 간	

(단위 : 천원)

징수할 총액	전회까지 징수금액	금회 징수금액	징수금액 누계	미징수금액
※ 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 계약의 경우 [경상]으로 표기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 내역

구 분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납부	
	징수일	징수금액	납부일	납부금액
착수금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계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기술료를 징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

(직인)

[별첨12]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 실시계약별 작성

과제개요	사 업 명	
	과 제 명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연구책임자	
계약내역	계 약 명	
	실 시 기 업	
	계 약 기 간	

사용년도

(단위 : 천원)

기술료 징수금액 누계	
-------------	--

기술료 사용 내역

구 분	전회까지 사용금액	금회 사용금액	사용금액 누계	미사용 잔액
전문기관 납부				
참여연구원 인센티브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기타 (성과활용 담당자 보상 등)				
V.A.T.				
계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기술료를 사용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

(직인)

[별첨13]**기술료 감면 신청서 및 의견서**

▶ 기술료 감면 신청서

사업명				
총괄과제명 (세부과제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참여기업명		
세부과제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총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감 면 대 상	실시기업명			
	기업유형			
	주소(전화번호)			
기 술 이 전 내 용				
기 술 료		감면전		
		감면후		
기술료 감면 사유·내용 및 감면 범위		※ 기술료 산출근거 등 명시		

국토해양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기술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 1. 기술료 감면 의견서 2부
2. 기타 추진체계도 연구비내역 등 참고자료 2부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직인)

주) 각 항목별 기재 내용의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붙임1]

▶ 기술료 감면 의견서

실시기업명		대표자	
기업유형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단체 등)		
구성 및 인원			
자 본 금	백만원	연간 매출액	백만원
주생산품목			
기술이전명			
실시기업 의 견	※ 기술이전 활용방향, 기술료, 기술료 감면사유, 감면율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해서 기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검토의견			
증빙서류	※ 감면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 중소기업 증빙서류(중소기업 감면 신청의 경우) - 기타 감면신청 근거서류		

실식기업에 기술 이전함에 있어 기술료를 감면(조정)하고자 위와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

(직인)

▶ 기술료 업무 체크리스트

단위 업무	체크리스트	확 인
기술실시 계약	연구수행 체계 (계약당사자 적합성, 연구비)	사업단(○핵심 ○-○세부) 연구단(○- ○세부) 일반
	계약 대상 기술	특허, 프로그램, 노하우, 기타
	계약 대상 기술의 소유권자	단독() 공동(,) 정부지분(%)
	실시기업 구분	자체실시, 참여기업, 비참여기업
	비참여기업 실시의 경우 동의서	있음, 없음, 해당없음
	기술료 징수 방법	고정, 경상, 혼합
	기술실시 형태	전용(고정만 해당), 통상, 양도
	계약금액	천원 + 매출액의 %
	기술료 감면	해당, 해당없음
	기술료 납부 계획	일시, 분납, 매출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계획 대비 실적	정상, 미납
	기술료 징수 현황 누계(천원)	징수금액/계약금액
	기술료 실적 제출(매년 2월)	관련서식 확인
기술료 사용	사용 효율별 적정성	별표
	기술료 사용 계획서(미사용시)	제출, 미제출
	기술료 실적 제출(매년 2월)	관련서식 확인
기술료 감면	기술료 감면 요건	중소기업, 일시납, 기타
	기술료 조정위원회 (전문가 검토)	필요, 불필요
	기술실시계약서(안) 검토	필요, 불필요

연구비 (천원)	연차	정부 출연	소유기관 부담	참여기업 부담	계
	1				0
	2				0
	3				0
	4				0
	5				0
	계	0	0	0	0
정부지분	※ 주관, 참여기업 실시의 경우 정부지분 100%				
담당자 (연락처)	(갑) ○○○연구원 :			검토일자 : 2009년 월 일 검 토 자 : 평가원	일 인
	(을) (주)○○기업 :				



찾아보기

관련사이트

http://www.kictep.re.kr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http://ctpass.kictep.re.kr	연구포털서비스
http://techbiz.kictep.re.kr	C-T Techno Bank

성과관리실 전화번호 · 이메일

kjyee@kictep.re.kr	031-389-6431	이갑재 실장
aygil@kictep.re.kr	031-389-6433	길아영 선임연구원
skjung@kictep.re.kr	031-389-6330	정시교 선임연구원
artcore@kictep.re.kr	031-389-6432	류상봉 연구원
tops117@kictep.re.kr	031-389-6434	하민기 연구원

2009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업무매뉴얼

인쇄 : 2009년 9월

발행 : 2009년 9월

편집 및 발행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총괄본부성과관리실

이책에 수록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빌딩 3층
TEL: 031-389-6431~4 FAX: 031-389-6436